

Walnut Valley Unified School District

“KIDS FIRST - Every Student, Every Day”

Robert Taylor, Ed.D., Superintendent
880 S. Lemon Avenue • Walnut, California 91789 • Tel. (909) 595-1261

2018년 7월

학부모님들께:

월넷 밸리 통합 교육구에서 새학년을 맞이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귀하는 법적으로 주어진 귀하의 권리와 의무를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문서는 캘리포니아 주법이 요구하는 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송부해야 하는 모든 통지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교육법의 규정에 의하면 각 교육구의 이사회는 미성년 학생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동 교육법의 지정된 조항들에 포함되어 있는 학부모의 권리와 의무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교육법 48980 및 이하 참조). 월넷 밸리 통합 교육구는 인종, 피부색, 태생 국적, 성별, 불구 장애 또는 영어구사 부족을 이유로 하여 교육구 프로그램에 입학 및 참여하는 데 차별을 하지 않을것입니다.(Title VI 및 Title IX)

교육법 조항 48981 에 의거하면 이 통지서가 부모/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전자 형식이나 일반 우편, 또는 부모들/보호자들과 서면으로 통신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다른 방식으로 전달되는 것을 허락합니다. 전자 수취확인 서명 및 의무 (Signature Acknowledgement & Accountability) 페이지는 학교나 교육구 웹사이트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 서명은 귀하가 학부모나 보호자로서 주어진 권리에 대한 정보를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며 어떤 특정 프로그램에 참가하겠다고 동의를 했거나 그러한 동의를 보류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교육법 48982)

어떤 교육구도 이 통지서에 명시된 어떠한 조항에 의한 조치에 대해서도 사전에 해당 학생의 부모나 보호자에게 특별한 통보가 없이는 행동을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교육법 48983-48984)

교육법의 다음 조항들은 귀하의 편의를 위하여 쉽게 풀어서 표현되었습니다. 어떠한 활동에 관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각 학교의 교장이나 교육 담당 부교육감에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술된 모든 활동들은 매 학년도의 시작과 더불어 시작되어 그 학년도 내내 계속되는 것들입니다. 귀하의 학생이 여기에 열거된 그 어떤 활동에 관련되는 경우 학교장은 그러한 관련에 대하여 별도의 특별 통지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열거된 그 어떤 활동에 대하여 또는 귀하의 학생이 그러한 활동에 참가하는 것에 대하여 현재 반대하는 바가 있으면 그것을 명시하는 편지를 귀하의 학생이 다니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육 담당 부교육감에게 보내셔야 됩니다

“Signature Acknowledgement & Accountability(수취확인 서명 및 의무)” 페이지에 서명하셔서 귀하가 이 문서에 포함 된 모든 통보 자료들을 수령했다는 것을 표시해 주십시오. 이 법규들이나 귀하의 권리에 관하여 질문이 있으면 교육구 교육 담당 부서나 귀하의 학교장에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귀하의 자녀들이 매우 성공적인 학년을 보낼수 있기를 바라며 또한 그것을 위해 조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Pupil Personnel Services

모든 학교들과 교육구들에 해당사항

석면 관리 계획서 – 40 CFR 763.93

월넷통합교육구는 학교 건물안에 석면이 포함된 물질에 대해 관리하며 매년 관리 계획서를 업데이트 합니다. 석면 관리 계획서 사본을 원하시면 관리, 운영, 교통, 시설부의 디렉터에게 595-1261 교환 31245 로 연락주십시오.

학교 입학 선택/허가 – EC 48980(h)

거주지-교육법(EC) 48200, 48204 및 48204.3

6 세-18 세까지의 미성년자는 (면제되지 않은 이상), 의무교육을 받아야 되며 부모나 법적 보호자가 거주하는 교육구안의 학교에 등록해야만 합니다.

아래 해당되는 학생은 그 교육구내의 학교 등록을 위한 거주 조건을 대신해도 됩니다: 수양 가정 또는 복지 및 기관법 아래 배치의 책임에 준한 교육구 범위안에 있는 인가된 아동 보호소에 배치되었을 경우; 학생이 수양자녀로 원래 학교에 남아 있을 경우; 독립한 학생으로 교육구 범위내에 거주하는자; 아동을 돌보는 성인도우미가 거주하는 교육구 범위 내에서 사는 학생; 그 교육구 범위내에 있는 주립 병원에 거주하는 학생 혹은 부모가 복무 중에 공식 군사 명령에 따라 주 내의 다른 군사 시설로 배치되었거나 배치될 예정인 학생.

교육구는 또한 학생의 부모 중 한 명이나 두 명 모두, 또는 법적 보호자가 우리 교육구 경계내에서 1 주일 동안 (수업 주간) 최소한 10 시간 이상 출근하여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면 학생이 우리학군에 다닐 수 있는 거주 증명 요구사항을 따른 것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학생의 부모나 법적 보호자가 교육구 구역 밖에 거주하지만 교육구 구역안에 있는 직장에서 학교 수업 주간 중, 최소한 3 일 간 학생과 같이 생활하면 거주자 자격이 성립됩니다.

Intradistrict Choice(한 교육구안에서의 전학) EC 35160.5 (b)

교육구안의 거주자들은 같은 교육구안의 다른 학교에 수용할 자리가 있을 경우 그 학교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교육구 안에 속한 각 학교에 대한 정보는 교육구 웹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운동선수들의 부모님들께서는 전학을 추진하시기 전에 CIF 운동 자격 규칙을 검토하셔야 됩니다. 다른 학교로 가는 통학 교통수단은 부모님의 책임입니다.

Interdistrict Attendance(교육구간의 전학) – EC 46600 *이하 참조*

학생의 부모나 법적 보호자께서는 다른 교육구에 속해 있는 학교에 다니기 위해서 거주 교육구로 부터 양도 허락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교육구들은 1 명 이상의 학생들이 5 년의 기간까지 교육구간에 전학을 할 수 있도록 협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협정에는 전학을 허가, 또는 거부하는 조건들과 규정들을 명확히

해야하며 재 신청의 기준, 또는 허가가 취소될 수 있는 조건들과 규정들을 명확히 포함시켜도 됩니다. 이 협정에 다르게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학생은 interdistrict transfer 을 재신청 하지 않아도 되며, 등록된 교육구의 교육위원회는 학생이 등록되어 있는 학교에 계속 다닐 수 있도록 허락해야만 합니다.

합의 여부 혹은 허가 발급 여부에 관계 없이, 해당 교육구가 전학 신청을 허가한 경우 거주지의 교육구는 부모가 현재 군대에 복무 중인 학생이 입학이 제안된 교육구의 학교로 전학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현재 거주하는 교육구나 전학을 받아들이는 교육구의 직원으로부터 교육법 48900(r)에 의해 약자 괴롭히기 행위의 피해자로 결정난 학생에게는 부모나 법적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현행 협정 아래 교육구간의 전학 허가 우선권을 주거나, 또는 협정이 없을 시에는 교육구간의 전학 협정을 만드는 추가적 고려가 있겠습니다.

District of Choice(교육구 자유 선택) – EC 48300. 0/하 참조.

일부 교육구는 교육구 자유선택을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구의 교육위원회가 해당 교육구를 교육구 자유선택을 허용하는 교육구로 운영하려는 경우 반드시 허용하는 전학생 수를 결정해야 하며, 교육구의 최대 수용 인원이 다 찰 때까지 전학을 신청하는 모든 학생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교육구 자유선택을 허용하는 교육구는 학생의 학업 혹은 체육 성적, 건강, 영어 실력, 가구 소득, 인종, 모국어, 읽기/쓰기 능력, 특수 지원 필요 여부나 섹션 200 에 나열된 개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편견 없고 무작위인 절차를 통해 학생이 선택되도록 해야 합니다. 전학을 신청하는 학생의 부모는 전학하려는 학년의 전년 1월 1일까지 교육구 자유선택을 허용하는 해당 교육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모는 2월 15일까지 잠정적으로 받아들여졌는지, 거부되었는지 혹은 대기자 목록에 올랐는지 서면으로 통지받습니다. 재배치된 군인의 자녀의 경우 변경된 입학 신청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업 과목 내용 설명서- EC 49063 및 49091.14

각 학교는 매년 그 학교에서 제공하는 모든 과목의 명칭, 내용 설명, 학습 목표를 포함한 교과과정의 안내서를 준비해야만 됩니다. 안내서를 원하시면 학교 사무실로 연락하십시오.

캘리포니아 청소년 건강법 – EC 51937-51939

캘리포니아 청소년 건강법에 따라 교육구는 학생들에게 통합형의 포괄적이며 정확하고 편견 없는 성 건강 및 HIV 방지 교육을 중학교와 고등학교 때 최소 한 번씩 시행해야 합니다. 이는 7-12 학년 학생이 다음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1) 자신의 성 건강 및 재생산 건강을 HIV, 다른 성병 및 의도하지 않은 임신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2) 청소년기 성장 및 발달, 신체상, 성, 성적 기호, 관계, 결혼 및 가족에 대하여 건전한 태도를 형성하기 위해. 3) 건전하고 긍정적이며 안전한 관계와 행동 양식을 갖기 위해. 또한 성이 인간 발달의 정상적인 부분임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부모나 법적 보호자는 다음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1. 포괄적인 성 건강 및 HIV 예방 교육에 사용되는 서면 및 시청각 교육 자료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2. 자녀가 포괄적인 성 건강 혹은 HIV 예방 교육을 받지 않도록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교육법 51930 에서 51939(캘리포니아 청소년 건강법)의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포괄적인 성 건강 혹은 HIV 예방 교육을 교육구의 인원 혹은 외부 강사가 진행할 것인지 통지받습니다.
5. 교육 계획이 해당 학년이 시작된 후에 세워진 경우 우편이나 다른 일반적인 통지 수단으로 교육이 진행되기 14 일 이전에 통지받습니다.
6. 교육구가 포괄적인 성 건강 혹은 HIV 예방 교육을 위해 외부 강사를 이용하거나 초청 연사와의 모임을 개최하려는 경우 다음을 통지받습니다:
 - a. 교육 날짜
 - b. 각 초청 연사의 기관명 혹은 소속

직업 진로 상담 및 학과목 선택- EC 221.5(d)

7 학년을 시점으로 교직원들은 학과목선택 또는 직업 상담, 직업가능성 조사, 또는 학생의 성별에 상관없이 학생의 관심 및 능력을 토대로 직업 선택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학과목 선택에 도움을 줄것입니다.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는 이러한 상담 시간 또는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통보를 받을 것입니다.

아동 발견 시스템- EC 56301

이 법은 셀파(특수교육 지역 플랜 구역)가 이주자, 노숙자, 주정부의 피후견인 장애아동들과 사립학교에 다니는 장애아동들을 포함시킨 지속적인 아동 발견 시스템을 위하여 문서상의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책 및 절차는 식별, 추천, 검사, 학습 계획, 실행, 검토 및 검사 추천을 시작하는 절차에 관한 부모님의 권리를 모든 부모님들께 알리는 통지서를 포함해야 됩니다.

3 세에서 21 세까지 수혜자격이 되는 장애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적절한 공공 교육(FAPE)을 최소한으로 제한된 환경에서 제공해야 되며 또한 3 살 미만의 “우려되는 영아나 유아”에게 조기 개입 서비스를 요구하는 연방법에 대해 부모들에게 통보를 하도록 교육구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각 교육구는 장애인들을 위해 아동 발견 시스템을 위한 서면의 방침과 절차를 설정해야 됩니다. 개별교육계획(IEP)을 위한 평가와 수혜자격을 고려하기 위해 누구라도 학생을 학교의 학생 조사팀(SST)에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은 특수 교육 검사를 의뢰한 후 15 일 이내에 제안하는 평가 계획, 부모님의 권리, 절차 보호 조약에 관련된 통보를 받으실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평가 계획의 일부로 검사가 끝난 후에 통보를 받을 것이며, 개별 교육 프로그램 팀과 면담을 가지게 됩니다. 이 면담의 목적은 검사 결과를 나누고, 교육적 추천안 및 그 추천의 이유들을 논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모님은 검사 보고서와 수혜자격 결정에 관한 서류(EC 56329)를 받으실 권리가 있고, 명시되 있듯이, 학생을 교실에서 관찰 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뇌진탕 및 뇌 손상 – EC 49475

뇌진탕이란 머리를 부딪치거나, 강타를 당했거나, 타격을 입었거나, 또는 다른 신체부위를 강타 당했는데 그 타격이 머리로 갔을 때 생기는 뇌 손상입니다. 대부분의 뇌진탕은 가법지만 모든 뇌진탕은 심각해 질 수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속히 발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장기간의 뇌 손상 및 사망을 포함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선택한 교육구, 차터스쿨, 또는 사립학교에서는, 활동 중에 뇌진탕이나 뇌 손상을 당한것 같은 운동선수가 있을 경우, 그 날 학교가 주최한 운동 활동의 나머지 순서를 즉시 중단해야만 됩니다. 그 운동선수는 자격증을 소지한 의료인으로 부터 검사를 받고 허락서를 받기까지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면허를 가진 의료진이 그 선수가 뇌진탕 또는 뇌 손상을 입었다고 확정하면 그 선수는 7 일 이상 면허 의료진의 감독 아래서 점차적으로 운동에 복귀하는 절차를 마쳐야 됩니다. 매년 운동 선수와 선수의 부모님 또는 보호자는 운동선수가 연습이나 시합을 시작하기 전에 뇌진탕 및 뇌손상 정보서에 서명을 하고 제출해야만 됩니다. 이 요구사항은 운동선수가 정규 수업일에 하는 운동활동이나 체육과목의 일부로 하는 운동활동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비밀 보장 의료 치료 – EC 46010.1

학교 관계자들은 비밀이 보장되는 의료치료를 받으러 가는 7 학년-12 학년의 어느 학생에게 학생의 부모나 보호자의 허락없이도 조퇴를 허락할 수도 있습니다.

교과과정 및 졸업 요건: 군인 가족 자녀 – EC 51225.1 및 51225.2

군인 가족은 자녀가 졸업에 필요한 지역 교과과정 요건이 캘리포니아주의 요건을 넘어서는 경우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졸업할 방법을 검토하기 위해 학교 상담사와 약속을 잡으십시오. 월넷 밸리 유니파이드 교육구 밖의 학교에서 완료한 모든 교과과정에 대해서는 일부 혹은 전체 크레딧이 발급됩니다. 거주지 학교의 상담사와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건강한 식단이 있어야 아이들이 배울 수 있으므로 학교는 매일 건강한 식단을 제공합니다.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으며, 신청서상의 정보는 기밀로 유지됩니다. 신청서는 일과 중 어느 때라도 제출될 수 있습니다.

디렉터리 정보-EC 49073

“디렉터리 정보”란 아래의 한 가지 이상의 아이템을 포함합니다: 학생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생년월일, 전공학습, 공식 승인 활동 및 스포츠 참여 여부, 운동부원들의 몸무게와 키, 학위 및 수상경력, 학생이 가장 최근에 다닌 공립 또는 사립학교 정보
어떠한 정보도 고용인, 장래 고용인 및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을 포함한 (그러나 국한되지 않은) 뉴스 미디어 대표 이외에 사유 이익기관에 누출해서는 안됩니다. 디렉터리 정보는 부모 또는 보호자가 서면으로 학교에 학생 디렉터리 정보 접근 금지를 요청하지 않은 이상 사전에 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학생이 노숙자로 확인된 정보에 관해서는 부모 또는 자격이 되는 학생이 그 디렉터리 정보가 공개되는 것에 대해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이상 공개되지 않을 것입니다.

포스터 아동들을 위한 교육 담당자 – EC 48204, 48645.5, 48853, and 48853.5, WIC 317 and 16010

이 법은 주 교육국이(명시되 있듯이) 캘리포니아 포스터 청소년 교육 태스크 포스와 협의하여 포스터 아동의 교육적 권리의 표준 통보문을 개발하고, 통보문을 인터넷 웹사이트에 올림으로서 포스터 아동을 위한 교육 업무 담당자들에게 보급할 수 있도록 통보문 이용이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Foster Youth Coordinating Programs 를 위한 주정부 연락처는 <http://www.cde.ca.gov/ls/pf/fy/contacts.asp> 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아나필락시스를 위한 응급 치료- EC 49414

아나필락시스란 심각하고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이는 알레르기를 유발시키는 음식, 약, 벌레 물림, 라텍스 및 운동을 접한 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증세는 기도가 좁혀지고, 발진 또는 두드러기, 메스꺼움 또는 구토, 약한 맥, 어지러움증을 포함합니다. 학교 시간 중에 일어나는 아나필락시스 반응의 약 25%는 이전에 음식 또는 다른 알레르기로 진단받지 않은 학생들에게 일어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에피네프린을 즉시 투입한 후, 응급처치 서비스에 전화연락을 하지 않으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를 알고 즉시 조치를 취해야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 수정된 교육법 EC 49414 는 교육구들이 에피네프린 오토인젝터를 학교 양호교사들 및 훈련받은 직원들에게 제공하여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보이는(알려진 병력이 없어도) 어느 학생에게도 에피네프린 오토인젝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해되는 결석- EC 46014 및 48205

종교 의식 참석 또는 도덕이나 종교 학습을 받기 위해 학교를 결석해야 되는 학생들은 부모나 보호자의 서면의 승낙이 있으면 학교 결석이 양해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학생이라도 양해된 결석으로 인해 못한 과제나 시험을 합리적인 기간안에 만족하게 마쳐서 합리적으로 제출했을 경우, 감점을 받거나 학업 점수를 잃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a) 섹션 48200 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결석이 양해되는 경우는 :

- (1) 질병으로 인한 것일 때
- (2) 카운티나 시의 보건 책임자의 지시에 따른 격리로 인한 것일 때
- (3) 의료, 치과, 검안 또는 척추신경 서비스를 받기 위한 목적일 때
- (4) 학생의 직계 가족의 장례식에 참가하기 위한 목적일 때로서 결석 기간은
캘리포니아 주 내의 장례인 경우는 1 일을 캘리포니아 주 밖의 경우는 3 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됨
- (5) 법이 규정한 방식으로 배심원 의무를 수행해야 할 때
- (6) 학생이 양육권을 가진 부모로 어린아이가 학교 수업중에 아프거나 병원예약이 있는 경우
- (7) 정당한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것으로 이에 포함되는(국한되지 않고) 것에는 법정
출두, 장례식 참석, 학생의 종교와 관련된 휴일이나 예식 준수, 종교적인 수업을
위한 수양회 참석 또는 직업 컨퍼런스, 또는 비영리 단체가 제공하는
입법이나 사법과정의 교육 컨퍼런스에 참여 할 때이며 이를 위해서는 학부모나
보호자가 서면으로 학생의 결석 허가를 신청하고 학교장이나 교육위원회가 수립한
통일 기준에 따라 지명된 대리인의 승인이 있어야 함.

- (8) 선거법 12302 조에 따라서 지역 선거구 위원회의 위원으로 일하는 목적인 경우
- (9) 현직 군인으로 (교육법§ 49701 에 정의된) 군복무 중이며, 전쟁터나 전쟁 지원 위치로부터 휴가를 받았거나 금방 돌아온 학생의 직가족과 시간을 보낼 목적인 경우.이 문단

에 응하여 허락되는 결석은 교육구 교육감의 재량으로 결정내린 기간동안 인정될 것입니다.

- (10)학생이 미국 시민이 되기 위해 시민권 선서식에 참석할 목적으로 결석할 경우

- (b) 이 조항 하의 사유로 결석하게 되는 학생에게는 그러한 결석 기간동안 놓치게 된 과제물과 시험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 완료할 수 있도록 허락이 되며 적당한 기간 내에 만족스럽게 완료하면 전체 크레딧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학생이 결석한 학급의 해당 교사는 과제물과 시험이 학생의 결석으로 인하여 놓친 과제물 및 시험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그에 상당히 동등한 수준인가를 결정할 것입니다.
- (c) 이 조항의 목적에 의하면 종교적 수양회 참석은 한 학기에 4 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d) 이 조항에 따른 결석들은 매일 출석 평균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결석으로 간주되며. 주정부 할당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 (e) 이 조항에 사용되었듯이, “직계 가족”이라 함은 45194 조에 규정된 것과 같은 뜻을 가지며 단 그 조항에서 “직원”에 관한 언급은 “학생”에 관한 언급으로 간주됩니다.

무상 및 열가 급식 – EC 49510 이하 참조

건강한 식단이 있어야 아이들이 배울 수 있으므로 학교는 매일 건강한 식단을 제공합니다. 학부모나 법적 보호자의 1 년의가족수입을 토대로 수혜자격이 되고 요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하는 학생들에게 무상 또는 열가의 점심이 학교에서 제공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으며, 신청서상의 정보는 기밀로 유지됩니다. 신청서는 일과 중 어느 때라도 제출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Nutrition Services 웹사이트 <http://www.schoolnutritionandfitness.com/index.php?sid=2208072141584182> 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동물을 해하거나 파괴하는 행위- EC 32255 이하 참조

동물이나 동물 부위를 해부하거나, 해하거나, 파괴하는데 윤리적으로 이의가 있는 학생은 그 교사에게 이의를 제기 해야만 합니다. 또한 이 이의는 그 학생의 부모나 보호자의 편지와 함께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동물을 해하거나 파괴적으로 사용하는 교육 프로젝트의 참여를 거부하는 학생들은 교사가 대안 교육 프로젝트가 가능하다고 믿을 경우, 대안 프로젝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이 과목이 요구하는 이 부분의 지식, 정보, 또는 경험을 얻을 수 있도록 교사는 학생과 함께 대안 교육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이에 합의해도 괜찮습니다.

노숙 청소년 교육 - 42 US 11432, EC 51225.1 및 51225.2

이 법은 노숙 학생들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보장되는 교육 및 관련된 기회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고 자녀들의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의미있는 기회를 제공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지역 교육기관은 노숙자 담당인을 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반자가 없는 청소년, 즉 부모나 보호자와 함께 살지 않는 10 대 부모들 또는 가출하거나 집에서 쫓겨난 학생들도 이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구의 담당자는 ‘아동 복지 및 출석’부의 Martha Arellano 입니다. 교육구 담당자는 노숙아동들을 위해 아래 적힌 내용을 담당합니다

1. 수혜자격이 되는 상황 (예: 대피소, 모텔, 호텔에서 살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한 가족 이상이 한 주택이나 아파트에 살거나 또는 폐허 건물, 차, 캠핑장, 또는 길거리에서, 또는 임시로 포스터 케어에서 지내거나, 부모나 보호자가 아닌 다른 어른과 함께 지내거나, 규격미달 주택에 살거나 가출로 인해 친구나 가족과 지내거나, 혼자가 되었거나, 이동 청소년일 경우)
2. 거주 증명, 예방 접종 기록 또는 결핵 피부 검사 결과, 학교 기록 또는 법적 보호자 서류없이 본 거주지나 현재 거주지에 있는 학교에 즉시 등록할 수 있는 권리
3. 교육이나 기타 서비스에 대한 권리 (예: 모든 학교 활동 및 학생이 수혜자격이 되는 프로그램에 전부 참여할 수 있고, 급식 프로그램에 자동적으로 수혜자격이 되며, 교통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등록시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담당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권리)
4. 크레딧이 부족하고, 지역 교육구의 졸업 필수 조건으로는 제 때에 졸업을 못 할 노숙 학생이 고등학교 2 학년 이후에 전학을 할 경우, 감소된 주 졸업 필수조건으로 4 년 안에 졸업할 수 있는 가능성을 통보받을 권리.
5. 노숙학생이 흡족하게 마친 과목에 대해 교육구가 부분점수를 접수할 권리.

예방 접종 – HSC 120325,120335, 120338, 120365, 120370 및 120375

학생들은 특정 전염병에 대한 예방 접종을 받아야만 됩니다. 학생들은 그 연령과 학년에 맞춰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으면 등교가 금지됩니다. 교육구는 학교 연령 아동들의 전염병 예방과 통제를 위한 조치를 위해서 지역 보건 요원들과 협력할 것입니다. 교육구는 어떠한 기금, 시설 또는 직원을 사용해도 되며, 부모님의 동의서가 있는 학생들에게는 면허 소지 의사나 정식 간호사가 예방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도 됩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 모든 학교의 학부모들은 현재 필수로 하는 백신들에 대해 개인적 신념 면제 제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016년 1월 1일 이전에 학교에 파일되어 있는 개인 종교 면제 허가는 학생이 다음 학년 기간에 접어드는 킨더가튼 (전환 킨더가튼을 포함해서) 또는 7 학년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유효하게 될 것입니다.

가정 기반의 사립학교 또는 자립적 학습 프로그램(Independent Study)에 출석하며, 학급에서 학습을 받지 않는 학생들은 예방접종을 필수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학생의 예방 접종 기록을 계속해서 학교에 제출해야만 됩니다. 이 예방 접종 필수 조건은 학생이 특수교육 및 개별 교육 프로그램 (IEP)에서 요구하는 관련 서비스를 받는것을 금하지 않습니다.

예방접종을 완전히 다 받지 않은 학생이 특정 질병에 노출되었고, 위에 묘사된 전염병에 대한 예방 접종 증명 기록이 없을 경우, 그 학생은 일시적으로 학교나 다른 교육기관으로 부터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법은 아이가 입학하기 전에 아래의 예방접종을 받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a) 월넷 통합 교육구로 오는 모든 신입생들은 (전환 킨더가튼 부터 12 학년까지) 소아마비,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수두 면역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 (b) 모든 전환 킨더가튼 학생들과 킨더가튼 학생들은 B 형 간염 예방 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만 됩니다.
- (c) 모든 7 학년 학생들은 2 번 째 ***홍역(백신을 함유한) 과 백일해 부스터 백신 증명서를 또한 제출해야만 됩니다.

일시적 장애 학생 교육- EC 48206.3, 48207 및 48208

일시적인 장애로 인해 정규 학교나 대안학교에 출석을 할 수 없든지 권장하지 않는 학생은 하루에 1 시간씩 학생의 집에서 개별적 수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추가정보를 원하시면 특수교육 부서로 연락을 주십시오.

주정부 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보건시설에 머무는 일시적 장애를 가진 학생은 병원이 소재하고 있는 학군의 등록을 위해 거주 증명 요구 사항을 충족시킨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학부모나 보호자는 학생이 일시적인 장애로 인해 머물고 있는 병원이나 다른 의료원의 위치를 교육구에 통보할 책임이 있습니다. 통보를 받으면 교육구는 학생이 교육법 48206.3 에 의거하여 개인교습을 받을 수 있는지 5 일(직장일) 안에 결정해야 됩니다. 만약 받을 수 있으면 5 일(직장일) 안에 교습을 제공할 것입니다

의료 또는 병원 서비스 – EC 49472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들

교육구는 학교 활동 또는 참석에 관련된 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한 학생들에게 의료 및 병원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약 처방- EC 49423

정규적으로 약을 복용하는 학생의 부모나 보호자는 학교 간호교사 또는 학교 교장에게 복용하는 약, 현재 복용량, 감독 의사의 이름을 알려줘야 합니다.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가 있으면 학교 간호교사가 의사와 연락하여 학생에게 있을 수 있는 약의 부작용에 대하여 교직원들에게 조언해 줄 수도 있습니다.

학생에게 처방약 주기 - EC 49423 및 49423.1

수업일중에 의사나 외과 의사의 처방약을 꼭 복용해야 되는 학생은 만약 교육구가 의사로부터 서면으로 복용해야 되는 약의 사용방법, 복용량 및 시간을 자세히 적은 설명서를 받고, 또한 의사 설명서에 적혀있듯이 처방된 약을 학생이 복용할 수 있도록 부모 또는 보호자가 교육구에 도움을 서면으로 요청하면 학교 간호교사나 다른 지정 교직원의 도움을 받거나 에피네프린 오토인젝터 또는 천식 흡입기를 학생 자신이 가지고 다니며 사용해도 됩니다.

간질약 투약 - EC 49414.7

만약 간질병이 있는 학생에게 의료인이 응급용 발작 방지약을 처방했다면, 부모나 보호자는 간호교사가 없을 시 학생이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한 두 명의 교직원이 응급용 발작 방지약을 줄 수 있는 훈련을 받도록 학교에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육국은 아래와 같은 점검표 본보기를 제공합니다.

1. 맥의 자녀가 학교 시간에 약을 복용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약 복용 시간표에 대해 자녀의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2. 맥의 자녀가 계속 진행 중인 건강 문제로 인해 정기적으로 약을 복용해야 된다면 (자녀가 집에서만 약을 복용한다 해도) 매 학년 초에 간호교사 또는 학교에서 지정한 직원에게 서면으로 된 편지를 보내주십시오. 복용하는 약, 현재 복용량, 약을 처방한 의사의 이름을 적으셔야 합니다. (EC 49480)
3. 만약 맥의 자녀가 학교에 있는 동안에 약을 복용해야 된다면, 부모 및 캘리포니아 면허를 가진 자녀의 의사 또는 의료인의 서면으로 된 편지를 학교에 전달해야 합니다. 매 학년 초에 또한 처방약, 지시사항, 또는 의사가 변경될 때마다 제일 최근의 정보가 적힌 편지를 보내주십시오. (EC 49423).
4. 부모나 보호자로서 맥의 자녀가 수업일에 복용하는 약은 부모나 보호자가 공급해야만 됩니다. 맥의 자녀가 가지고 다니면서 혼자서 복용하도록 허가받은 약이 아니면 부모, 보호자 또는 다른 어른이 학교에 약을 가져와야 합니다.
5. Ritalin 과 같은 모든 통제 약품은 학교로 가지고 올 때 약의 숫자를 세어서 약 일지에 적어야 합니다. 그 약을 배달하는 부모, 보호자 또는 다른 어른은 일지에 서명함으로 약알의 숫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6. 학교에서 자녀에게 주어야만 되는 각 약은 미국에서 면허를 받은 약사의 라벨(지시사항)이 있는 별도의 약통에 들어있어야 합니다. 그 약통에는 학생의 이름, 의사 이름, 약 이름 및 언제 얼마큼 복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시사항이 적혀있어야 합니다.

7. 학년도가 끝나기 전에 중단하거나, 날짜가 지났거나 그리고/또한 복용하지 않은 모든 약은 가져가셔야 됩니다.
8. 닥의 자녀의 학교의 약품 관련 정책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따르십시오.

단축 수업 및 직원 교육의 날(무수업) – EC 48980(c)

이 법은 학교에 등록된 모든 학생들의 부모님과 보호자님들에게 단축 수업일과 “직원 교육의 날(무수업)”에 관한 스케줄을 알리는 연례 통지서를 보내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만약 단축 수업일이나 “직원 교육의 날(무수업)”들이 학교가 개학한 이 후에 정해졌다면 학교는 영향을 받을 학생들의 부모나 보호자들에게 최소한 빠른 시일내에 (그러나 예정된 날짜보다 최소한 한 달 전에) 통보해야만 됩니다.

차별 금지 성명

월넷밸리 교육구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권한과 기회가 주어지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구의 학습 및 교육지원 프로그램들, 서비스 및 활동들은 개인의 인종, 피부색, 혈통, 국적, 민족그룹, 나이, 종교, 이민 신분, 혼인 여부 또는 유전,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성별, 성적 취향, 성 정체성, 또는 성별 표현; 이러한 한 가지 이상의 특성을 가진 것으로 인식되는; 또는 이러한 한 가지 이상의 특성을 실제로 가졌거나 인식되는 개인 또는 그룹과 관련된 근거로 인해 어느 누구에게 차별, 괴롭히기, 협박 및 약자 괴롭히기는 없을 것입니다. 특히 주법은 학교등록, 카운슬링, 체육시간, 운동활동, 스포츠에서 성별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트랜스 젠더 학생들은 남녀별로 나뉜 학교 프로그램 및 활동에(예: 운동팀, 스포츠 대회, 견학) 참여하고 그들의 성 정체성과 일치하는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입니다. 교육구는 영어가 미숙한 이유로 입학을 하거나 교육구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장벽이 되지않을 것을 보장합니다. 불법적 차별, 괴롭힘, 업포 또는 약자 괴롭히기에 대한 불만은 균등 불만 처리 절차를 통해 조사될 것입니다. 이러한 불만은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을 처음으로 안 이후 6개월 안에 접수해야 됩니다. 불만 접수 양식 또는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면 인사과에 연락을 주십시오.

대안학교 통보- EC 58501

“대안학교 통보”

캘리포니아 주법은 모든 교육구에게 권한을 주어 대안 학교를 운영 제공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법 58500 조는 대안 학교를 정의하기를 어느 학교내에 부설되는 학교 또는 별개의 학습 그룹으로서 그 운영을 다음과 디자인 된 학교를 말합니다.

- (a) 학생으로 하여금 자립심, 진취성, 친절, 자발성, 풍부한 기지, 용기, 창의력, 책임감 및 희락과 같은 긍정적인 가치들을 개발하는 기회를 극대화 하고
- (b) 최선의 학습 교육은 학생이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임을 인식하고
- (c) 학생의 자발적인 동기유발을 극대화하고 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의 시간에는 자신의 관심사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학업 환경을 유지하며 (이러한 관심사는 그 학생이 전적으로 또한 독립적으로 생각해 낸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가 배우고자 선택한 프로젝트를 가르치는 교사로 부터 전체 또는 일부를 취한 결과일수도 있음) 또한

(d) 교사, 학부모/보호자 및 학생이 서로 협력하여 학습 과정과 주제들을 개발하는 기회를 극대화 하되 이러한 기회는 지속적 영구적이 되도록 하고

(e) 교사, 학부모/보호자 및 학생이 변화하는 세계에 잘 반응하는 기회를 극대화 하는 것으로 이 세계에 포함되는(국한되지 않고) 것으로는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사회가 있습니다.

부모, 학생, 또는 교사가 대안학교에 대해 추가 정보를 원하시면 여러분을 위해 카운티 교육감, 해당 교육구의 행정실, 통학교 교장실에 이 법에 대한 사본이 있습니다.

본 법 조항은 관심이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교육 위원회에 요청하여 각 교육구안에 대안 학교 프로그램이 설치되도록 하는 권한을 특별히 부여하고 있습니다.

살충제 – EC 17612 및 48980.3

그 해에 학교 시설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살충제와 그의 사용도의 사본을 원하시든지 개별적 살충제 사용에 대한 통보를 적어도 사용 72 시간 전에 받기를 원하시면 Maintenance, Operations, Transportations and Facilities 부서의 디렉터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이 통지서는 각 살충제에 함유된 활성 성분(들)을 밝히고 사용 계획 날짜, 살충제 사용과 감축의 인터넷 주소, 그리고 만약 학교가 계획안을 게시판에 올렸다면 학교의 통합 병해충관리계획을 찾을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밝힐 것 입니다.

건강 검진 - EC 49451

부모나 보호자는 매년 학생의 건강검진을 보류하는 동의서를 교장 선생님과 함께 작성하고 부모나 보호자가 서명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염병이나 감염될 병으로 인정된 병으로 인해 학생이 아프다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학생을 집으로 보낼 것이며 그 전염병으로 부터 해방되었다고 학교 당국이 만족할 때 까지 학생은 학교에 올 수가 없습니다.

참고: 학교가 실시해야만 되는 건강검진에는 EC 49452 에 따른 시력검사 및 청력검사가 EC 49452.5 에 따른 척추 측만증 검사가 포함됩니다. EC 49452.6 에 따른 type 2 당뇨병 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EC 49451 및 20 USC 1232h 에 명시되 있듯이 부모 또는 보호자는 개인적 신앙을 토대로 검진 거부 신청서를 제출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학생 급식 – 2017 년 아동 결식 방지 및 공정한 대우법 – EC 49557.5

월넛 밸리 유니파이드 교육구에는 급식비 전액 혹은 일부를 지불하는 학생이 수중에 혹은 계좌에 충분한 돈이 없어 급식을 구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대한 급식비 정책(Meal Charge Policy)이 있습니다. 급식비 정책은 다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http://walnutnutrition.org> 혹은 정책의 사본을 원하는 경우 아동 영양부(Child Nutrition Services)의 관리자와 연락하십시오.

학생 기록 - EC 49063 및 49069, 34 CFR 99.7, 20 USC 1232g

학생의 발달 및 교육 진도 내력은 학생 기록부 (손글씨, 인쇄, 테이프, 필름, 마이크로필름 또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 기록되었더라도)에 보존되어야 됩니다. 교육구는 그러한 기록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것입니다. 부모/보호자는 다음의 권리가 있습니다. 1) 학교가 보관하는 학생의 교육기록을 검사하고

검토할 수 있는 2) 부모가 믿기에 오류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기록을 정정해 주기를 요청할 수 있는 3) 교육 기록의 누출에 대한 어느정도의 통제권

정당한 교육적 관심이 있는 학교 관계자들은 그 학교 관계자가 그의 전문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기록을 검토하는 것이라면 부모의 동의 없이도 학생 기록을 볼 수도 있습니다. 교육구는 부모의 동의없이도 학생이 등록을 청했거나 할 의사가 있는 다른 교육구 직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학생의 교육기록부를 공개 할 것입니다.

학생의 기록부를 보기 위해서는 부모의 서면 요청 양식을 학교 사무실로 제출해야 되며 학교는 요청 양식을 받은지 5일 (영업일)안에 기록을 볼 수 있게 해 줘야 됩니다. 비용을 내면 학생기록부의 사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교 기록에 대한 어떠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학교 사무실에 서면으로 문제를 제기하여야만 됩니다. 학교 기록에 대한 문제제기는 기록이 1) 부정확하고 2) 근거없는 개인의 판단 또는 추론 3) 목격자의 능력 범위를 벗어난 판단 또는 추론 4) 적혀진 목격시간과 장소가 거론된 사람의 개인적 관찰에 근거를 두지않음 5)오해의 소지 또는 6) 학생의 사생활 또는 권리 침해

부모는 FERPA (미국 가정 교육 권리 및 사생활 법) 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간주되는 교육구에 대해 Family Policy Compliance Office, U.S. Department of Education, 400 Maryland Ave., SW, Washington, D.C. 20202-4605 로 편지를 써서 미국 정부 교육국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부모와 법적 보호자의 정보에 대한 권리

캘리포니아 교육법 51101(일부)

공립 학교에 입학한 학생의 부모와 법적 보호자는 공립 학교에서 자녀의 교육을 위해 상호 지원하고 존중하는 동반자로서 다음과 같이 학교로부터 통지받고 자녀의 교육에 참여할 권리와 기회를 가집니다.

- (1) 요청을 한 뒤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자녀의 수업을 참관할 권리.
- (2) 요청 후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자녀의 교사와 교장과 만날 권리.
- (3) 교육구 직원의 지도하에 학교의 시설과 학교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자원을 기부할 권리. 여기에는 교사의 허락하에 직접 지도를 받으며 수업 내에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
- (4) 자녀가 학교에 허락 없이 결석한 경우 시기적절하게 통지받을 권리.
- (5) 학생의 표준 학력고사 및 주 단위 학력고사 성적과 학교의 주 단위 표준 학력고사 성적 정보를 받아 볼 권리.
- (6) 자녀를 위해 특정 학교를 요청하고 해당 교육구로부터 답변을 받을 권리.
- (7) 자녀를 위해 안전하며 배움에 도움이 되는 학교 환경을 가질 권리.
- (8) 자녀의 수업에서 사용되는 교과 자료를 점검할 권리.

- (9) 학교에서 자녀의 진도에 관해 통지받으며 자녀에게 문제가 생길 경우 연락해야 하는 적절한 학교 직원을 통지받을 권리.
- (10) 자녀의 학교 기록부를 열람할 권리.
- (11) 자녀가 성취해야 하는 학업 성취 기준, 능력 혹은 기술에 관한 정보를 받을 권리.
- (12) 징계 규정 및 절차, 출석 정책, 복장 규정 및 학교 방문 절차 등을 포함한 학교 규정에 관하여 미리 통지받을 권리.
- (13) 학교가 자녀를 포함하여 심리 검사를 시행할 경우 정보를 받아 볼 권리와 이러한 검사를 허가하지 않을 권리.
- (14) 부모 자문 위원회, 학교 위원회 혹은 현장 관리 지도 팀에 구성원으로 참여할 권리.
- (15) 자녀의 기록 중 부모가 느끼기에 정확하지 않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사생활 침해라고 여겨지는 것에 관하여 문의하고 학교로부터 이에 대한 답변을 받을 권리.
- (16) 자녀가 유급당할 위험에 처해 있는 경우 실시할 수 있는 경우 학년 초에 통지받고 학생의 진급 및 유급 결정을 담당하는 학교 담당자와 상담할 권리와 자녀의 유급 혹은 진급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에 관하여 안내받을 권리.

교육하기에 안전한 장소 법안 – EC 234 and 234.1

월넷 통합 교육구는 사실로 또는 감지되는 형법 422.55 와 교육법 220 에 규정돼 있는 특성들과, 장애, 성별, 성별 정체성, 성별 표현, 국적, 인종이나 민족, 종교, 성적 취향, 이민 신분 또는 사실로 혹은 감지되는 한 가지 이상의 이러한 특성을 보이는 사람이나 그룹과의 관계를 근거로 한 차별, 희롱, 폭력, 위협, 약자 괴롭히기로 부터 자유로운 교육 환경을 유지하도록 전념을 다 할것입니다. 차별, 희롱, 위협, 또는 약자 괴롭히기를 목격한 모든 교직원들은, 중재를 위해 곧장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안전할 경우) 됩니다. 교육구의 학교안에서 일어나는 학교 활동이나 학교 출석에 관련된 차별, 희롱, 폭력, 위협, 또는 약자 괴롭히기에 가담한 학생은 퇴학을 포함시킨 징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건의 발생 보고 그리고/또는 차별, 희롱, 협박, 약자 괴롭히기에 반대하는 교육구의 방침 사본을 원하시면 학교의 Pupil Personal Services 에 연락을 하십시오.

학교 및 학생 징계 ((EC §§ 35291, 35291.5) (EC48940 (a)) --

각 학교 현장은 학교 징계에 관한 규칙과 절차를 채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교육구는 학교 징계 규칙 및 절차를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절차를 정할수 있으며 그들이 학생 징계에 관한 교육구 규칙을 알수 있도록 정할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헌법 제 1 장 28C 조에 따르면 모든 학생들은 안전하고 잘 보호가 되어있으며 평화로운 캠퍼스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행동은 교육법 (EC 48900 이하 참조)에 열거된 것으로 반드시 정학과(또는) 퇴학의 고려 대상이 됩니다:

EC 48900—**정학과 퇴학의 근거**

학생이 등록된 학교의 교장이나 교육감께서 학생이 아래를 포함한 조항(a) 부터 (r) 까지의 어떠한 조항이라도 해당되는 행동을 취했다고 결정을 내리지 않는 한 학생은 정학이나 퇴학추천을 받지 않을것입니다.

- A. (1)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힌다거나, 그것을 시도, 또는 위협 했을 때
(2) 다른 사람에게 고의적으로 힘이나 폭력을 썼을 때 (자기 방어 제외)
- B. 총기, 칼, 폭발물 또는 다른 흉기를 소지, 판매, 또는 공급했을 때, 다만 이런 종류의 물건을 소지 했을 경우, 학생이 자격증이 있는 교직원으로 부터 교장이나 교장 대리인의 동의 아래 그 물건을 소지 할 수 있는 허락서를 받았을 경우는 제외됨
- C. 건강과 안전법 Division 10 의 챕터 2 (section 11053 부터 시작하여) 에 나열된 규제 약품이나, 알코올 음료수, 또는 취하게 하는 어떤 종류의 물품을 불법으로 소지, 사용, 판매 및 공급을 하거나 이 물질들로 인해 취해 있을 때
- D. 건강과 안전법 Division 10 의 챕터 2 (section 11053 부터 시작하여)에 나열된 규제 약품, 알코올 음료수, 또는 취하게 하는 어떤 종류의 물질들이라도 불법으로 제공, 판매 주선 또는 협상, 또한 다른 액체, 물질, 또는 원료를 판매, 배달, 또는 공급하면서 그 액체, 물질, 또는 원료를 규제 약품이나 알코올 음료수 또는 취하게 하는 물질로 제시 할 때
- E. 타인의 물건을 도둑질 또는 강탈을 했거나 시도 했을 때
- F. 학교나 개인의 소유물 파손의 근거가 있거나 시도의 근거가 있을 때
- G. 학교나 개인 소유물을 훔치거나 시도 했을 때
- H. 담배, 시가, 축소형 시가, 클로브 담배, 연기없는 담배, 들이마시는 형, 씹는 형, 구장 을 포함하여 (그러나 국한 되지 않은) 담배 또는 담배나 니코틴이 함유된 물질을 소지했거나, 사용 했을 때 하지만 이 부분은 학생의 처방약 사용과 소지를 금지하지는 않는다.
- I. 외설적인 행동이나 상습적인 모독, 또는 상스러운 말 사용에 가담 했을 때
- J. 건강과 안전법 Section 11014.5 에 명시된 것 같이 마약사용에 관련된 물건을 불법으로 소지하거나 불법으로 판매 제공, 주선, 또는 협상 했을 때
- K. 학교 활동을 방해하거나 고의적으로 수퍼바이저들, 교사들, 행정인들, 교직원들 또는 임무를 수행하는 다른 교직원들의 합법적인 권위에 반항 했을 때
- L. 도난당한 학교 소유물이나 개인 소유물을 알면서도 취했을 때
- M. 모조품 총기를 소지 했을 때. 이 사항에 쓰인 “ 모조품 총기” 란 총기의 복제품으로, 기본 총기와 겉 물질이 너무 흡사해서 보통 사람이 보기에 복제품을 진짜라고 결정을 내릴 수 있음을 말함.
- N. 형법 Section 261, 266c, 286, 288, 288a, 또는 289 에 명시된 성 폭행을 했거나, 시도 했을 때, 또는 형법 243.4 에 명시된 바와 같이 성구타를 했을 때
- O. 학생이 증인이 되거나 또는 그 학생이 증인이 되는 것에 대한 복수, 또는 둘 다의 목적으로 학교 훈육절차 중에 피해자로 주장하는 학생 또는 증인이 되는 학생을 괴롭히거나, 협박하거나, 위협했을 때
- P. 처방약 소마 (Soma)를 불법으로 제공, 판매주선 및 판매 협상을 했을 때
- Q. 신고식 (hazing) 에 가담했거나, 가담을 시도 했을 때. 이 조항의 목적에 의하면 신고식(Hazing) 이란 학생 조직이나 학생회(그 기관이나 학생회가 교육기관에서 합법적으로 인정이 되었거나 안 되었거나)의 입회식, 또는 입회식 전에 하는 예식의 방법으로 심각한 신체적 상해 또는 개인

격하, 또는 불명예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과거, 현재, 또는 미래의 학생 회원들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해를 끼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예식을 뜻한다. 이 조항의 목적으로는, “신고식”에는 운동 경기, 또는 학교인가 행사를 포함하지 않는다.

R. 약자 괴롭히기에 가담하기. 이 부분의 목적을 위해 아래의 용어는 다음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 (1) “약자 괴롭히기”란 48900.2, 48900.3 또는 48900.4 조항에 정의된 것과 같이 학생 1명이나 그룹으로 벌인 한 가지 이상의 행동을 포함하여 어떤 심한 신체적 또는 구두적인 행동 또는 행위가 (필기로 또는 전자기를 이용한 소통을 포함하여) 한 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아래 중 한가지 이상의 영향을 미쳤거나 미쳤다고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을 때를 말합니다.
 - (a) 한 명이나 그 이상의 합리적인 학생들에게 그들 자신에게나 소유물에 손상을 줄 수 있다는 두려움을 심어줄 때
 - (b) 합리적인 학생의 신체적 혹은 정신적 건강에 크게 해로운 영향을 끼치게 하는 원인이 될 때
 - (c) 합리적인 학생의 학업에 크게 방해를 받게하는 원인이 될 때.
 - (d) 합리적인 학생이 학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활동 및 특권에 참여하거나 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크게 방해 받게 하는 원인이 될 때.
- (2) (A) “전자기기 행동” 이라함은 학교 안이나 밖에서 시작되어 만들어지거나 유포된 전화, 무선전화 또는 다른 무선 소통 기계, 컴퓨터, 또는 무선 호출기 및 아래를 포함한 (그러나 이에 국한되지 않은) 전자기기로 메시지, 문자 보내기, 음성, 또는 사진, 또는 소셜 네트워크 인터넷 웹사이트에 올리기를 포함한 (그러나 이에 국한되지 않은) 소통 방법을 뜻합니다.
 - (i) 메세지, 문자, 또는 영상
 - (ii) 소셜 네트워크 인터넷 웹사이트에 올리기 (아래를 포함하나 국한되지 않은):
 - (1) ‘Bum Page’에 올리거나 만들기. “Bum Page”란 문단 (1)에 나열된 한가지 이상의 결과를 초래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인터넷 웹사이트를 뜻함.
 - (2) 문단(1)에 나열된 한가지 이상의 결과를 초래할 목적으로 다른 실존 학생으로 믿을 만 하게 가장하는 것.
 “Credible impersonation(믿을만 하게 가장하기)”이란 고의로 허락없이, 한 학생을 괴롭힐 목적으로 그 학생으로 가장하여 가장한 학생이 당한 학생이거나 학생이었다고 다른 학생들이 타당히 믿거나 믿었던것을 뜻함.
 - (3) 문단 (1)에 나열된 한 가지 이상의 결과를 초래할 목적으로 거짓 프로필을 만들기. “False Profile (거짓 프로필)”이란 허구 학생의 프로필 또는 거짓 프로필을 만든 장본인이 아닌 다른 실존 학생의 특성이나 유사성을 이용한 프로필을 뜻함“
- (B) 문단 (1) (A) 항목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해 보내졌거나 현재 인터넷에 올려있다는것 만을 근거로 전자기기 사용 행위를 품행의 전부로 여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3) “합리적인 학생”이란 특수 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포함하여 (그러나 이에 국한되지 않은) 자기 나이 또래의 아이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같은 나이 또래의 아이를 위하여 행동면에서 일반 수준의 배려, 기술, 판단력을 보이는 학생을 뜻합니다.

- S. 학생의 행동이 학교 활동이나 학교 출석에 관련되고, 그 교육구의 교육감이나 교장 관할하에 있는 학교내에서나 다른 교육구 안에서 발생했을 경우가 아니면 학생은 이 부분에 열거된 어떤 행동으로 정학이나 퇴학을 당하지 않는다. 학생은 아래를 포함해서 (그러나 국한되지 않는) 이 Section 에 열거되고, 학교 활동 또는 출석에 관련 된 행동 (언제 발생 했든지)으로 인해 정학이나 퇴학을 받을 수 있다.
1. 교내에 있을 때
 2. 등 하교시
 3. 점심시간 (교내외에서)
 4. 학교 주최 활동 중이나 오고 갈 때
- T. 다른 사람에게 신체 상해를 입히는데 보조 했거나 선동 (형법 Section 31 에 명시 됐듯이), 또는 시도 한 학생은 이 Section 에 의거하여 정학 (퇴학은 아님)을 당할 수도 있다. 예외는 학생이 청소년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큰 신체 상해, 또는 심각한 신체 상해로 해를 초래한 폭행 범죄의 보조인, 또는 선동인으로 판결이 내려 졌을 경우, 조항 (a) 에 의거하여 징계의 원인이 될 것이다.
- U. 이 Section 에 사용된 “학교 소유물”이란 전자 파일과 전자 자료도 포함 (그러나 국한되지 않는) 된다.
- V. 이 조항아래 징계 대상이 되는 학생에게는 그 교육구의 교육감이나 교장의 판단으로 정학이나 퇴학 대신에 연령에 적절하고 학생의 부정행위를 교정 할 수 있도록 도안된 다른 대안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이는 조항 48900.5 에 명시돼 있듯이 징계 대상이 되는 학생을 위한 카운슬링과 화 다스리기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그러나 국한되지 않은) 교육구의 교육감이나 교장은 자기 재량으로 이 Section 에 의해 징계를 받아야 할 학생에게 정학이나 퇴학 대신 카운슬링이나 ‘화 다스리기’ 프로그램을 포함한 (그러나 국한되지 않은) 대안법을 제공할 수 있다.
- W. 학교 활동에 무단결석, 지각, 또는 결석을 하는 학생들에게는 정학이나 퇴학 대신 대안법을 요하는 입법부의 의도가 있다.

EC 48900.2. 성희롱

섹션 48900 에 명시된 사유에 더하여 교육감이나 학생이 등록된 학교의 교장이 섹션 212.5 에서 정의된 바에 따라 성희롱을 저질렀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생은 학교에서 정학되거나 퇴학 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챕터에서 섹션 212.5 에 서술된 행위는 피해자와 동일한 성별의 합리적인 사람이 개인의 학업 성취에 나쁜 영향을 줄 만큼 혹은 위협적이거나 적대적, 혹은 공격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할 만큼 중대하거나 파급력이 큰지 고려해야 합니다. 본 섹션은 유치원이나 1~3 학년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C 48900.3. 혐오 폭력

섹션 48900 과 48900.2 에 명시된 사유에 더하여 교육감이나 4~12 학년 학생이 등록된 학교의 교장이 섹션 233 의 조항(e)에서 정의된 바에 따라 학생이 혐오 범죄를 일으켰거나, 일으키려 시도했거나, 일으키려고 위협하였거나, 혐오 폭력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학생은 학교에서 정학되거나 퇴학 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EC 48900.4. 괴롭힘, 위협 혹은 협박

섹션 48900 과 48900.2 에 명시된 사유에 더하여 교육감이나 4~12 학년 학생이 등록된 학교의 교장이 학생이 교육구 직원 혹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괴롭힘, 위협 혹은 협박에 고의적으로 참여했다고 판단하고, 이 행위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키고 위협적이거나 적대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학교 직원이나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며 교과과정을 방해할 것으로 실질적이며 합리적으로 생각될 만큼 중대하거나 파급력이 큰 경우 학생은 학교에서 정학되거나 퇴학 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EC 48900.5. 정학의 제한

섹션 48911.1 에서 설명된 감독 정학을 포함한 정학은 올바른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한 다른 교정 수단이 실패할 때만 시행됩니다. 교육구는 사용된 다른 교정 수단을 문서로 기록하고 해당 문서를 학생의 기록부에 배치할 수 있으며, 이는 섹션 49069 에 따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섹션 56026 에 정의된 바에 따라 특수 지원이 필요한 개인을 포함한 학생은 국가법(United States Code) 타이틀 20 섹션 1415 에 따라 섹션 48900 에 열거된 사유 중 어떠한 이유로도 학교의 교장이나 교육감이 해당 학생이 섹션 48900 의 조항(a), (b), (c), (d), 혹은 (e)를 위반했거나 학생의 존재가 타인에게 위협을 초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첫 위반 시에 정학될 수 있습니다.

EC 48900.7. 테러 위협

(a) 섹션 48900, 48900.2, 48900.3 및 48900.4 에 명시된 사유에 더하여 교육감이나 학생이 등록된 학교의 교장이 학생이 학교 관계자나 학교 자산 혹은 모두에게 테러 위협을 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생은 정학되거나 퇴학 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B) 본 섹션에서 “테러 위협”이란, 개인이 악의적으로 사망, 타인의 중대한 부상 혹은 \$1,000 가 넘는 금액의 물적 피해를 일으키는 범죄를 저지르겠다고 위협하며, 실제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표면적으로 혹은 발언이 있었던 정황상 명백하며, 무조건적이고, 직접적이며, 구체적이어서, 위협을 받는 사람에게 동기가 중대하며 위협이 곧 현실화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여, 자신이나 가족의 안전, 교육구 자산 혹은 위협받는 사람이나 그 가족의 자산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위협으로 간주할 만한 구체적인 의도를 갖고 한 서면 및 구두 발언을 포함합니다.

EC 48915. 퇴학 권고 요건

EC 48915. 퇴학 권고 요건

(a) (1) 조항(c) 및 (e)에서 정해진 것을 제외하고, 학교의 교장이나 교육감이 해당 상황에서 퇴학이 권유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거나 다른 대안 교정 수단이 해당 행위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학교의 교장이나 교육감은 학교에서 혹은 학교 밖에서 치러진 학교 활동에서 다음의 행위를 저지른 학생의 퇴학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 (A) 정당방위를 제외하고 타인에게 중대한 신체적 부상을 가함.
- (B) 칼 혹은 학생에게는 합리적으로 필요가 없는 다른 위험한 물건을 소지.
- (C) 건강 및 안전법(Helath and Safety Code)의 디비전 10 챕터 2(섹션 11053 부터 시작)에 나열된 금지 약물을 불법 소지. 다음의 경우는 제외:
 - (i) 농축된 대마를 제외하고, 마리화나를 1 온스 미만으로 소지한 것이 처음 적발된 경우.
 - (ii)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약물을 학생이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소지하는 경우나 의사가 학생에게 처방한 약물을 소지하는 경우.
- (D) 절도 및 고문.
- (E) 형법(Penal Code)의 섹션 240 및 242 에 정의된 바에 따른 모든 학교 직원에 대한 폭행 혹은 폭력.
 - (2) 학교의 교장이나 교육감이 (1) 문단에 기술된 대로 결정하는 경우, 최대한 빨리 시행하여 학생이 교육 시간을 잃지 않도록 합니다.
 - (b) 학교의 교장이나 교육감의 권고에 따라 혹은 심문관이나 섹션 48918 의 조항(d)에 따라 임명된 행정관에 의하여 교육구의 운영 위원회는 학생이 조항(a)의 문단(1)이나 섹션 48900 의 조항(a), (b), (c), (d) 혹은 (e)에 나열된 행위를 저지른 것을 발견했을 때 해당 학생의 퇴학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 중 어떤 것 때문이라도 학생의 퇴학 결정은 다음 중 하나 혹은 모두에 해당할 때에 한합니다.
 - (1) 다른 교정 수단을 쓸 수 없거나 다른 교정 수단이 올바른 행실을 이끌어 내는 데 반복적으로 실패했음.
 - (2) 행위의 성격을 고려할 때 학생의 존재가 학생이나 타인의 신체적 안전에 지속적으로 위험을 초래함.
 - (c) 학교의 교장이나 교육감은 섹션 48911 에 따라 학교나 학교 밖에서 개최된 학교 활동에서 다음의 행위를 저지른 학생을 즉시 정학하거나 퇴학을 권고합니다.
 - (1) 총기를 소유, 판매 혹은 달리 공급하는 행위. 본 조항은 학생이 인증받은 학교 직원으로부터 총기를 소지할 서면 허가를 사전에 득한 경우에는 총기를 소지하는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지 허가는 교장이나 교장이 지정한 사람과 합의로 결정됩니다. 본 조항은 교육구의 직원이 총기 소지를 검증한 경우에만 총기 소지 행위에 적용됩니다. 섹션 48900 의 조항(m)에 정의된 모의 총기 소지는 본 조항과 조항(d)에 따라 정학이나 퇴학 조치가 의무적인 위반은 아니나 조항(e)에 따라 정학이나 퇴학이 결정될 수 있는 위반 사항입니다.
 - (2) 타인에게 칼을 휘두르는 행위.
 - (3) 건강 및 안전법(Helath and Safety Code)의 디비전 10 챕터 2(섹션 11053 부터 시작)에 나열된 금지 약물을 불법 판매하는 행위.
 - (4) 섹션 48900 의 조항(n)에 정의된 성폭행을 저지르거나 시도하거나 섹션 48900 의 조항(n)에 정의된 성폭력을 저지르는 행위.
 - (5) 폭발물을 소지하는 행위.
 - (d) 교육구의 운영 위원회는 학생이 조항(c)에 나열된 행위를 저지른 것을 적발하면 학생의 퇴학을 명할 수 있고 학생을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습 프로그램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 (1) 행실 문제가 있는 학생을 수용할 준비가 적절히 되었음.
 - (2) 중학교, 고등학교 혹은 초등학교에서는 제공되지 않음.
 - (3) 정학 당시 학생이 다니는 학교 현장에 위치하지 않음.

(b) 학교의 교장이나 교육감의 권고에 따라 혹은 심문관이나 섹션 48918 의 조항(d)에 따라 임명된 행정관에 의하여 교육구의 운영 위원회는 학생이 조항(a)의 문단(1)이나 섹션 48900 의 조항(a), (b), (c), (d) 혹은 (e)에 나열된 행위를 저지른 것을 적발했을 때 해당 학생의 퇴학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교정 수단을 쓸 수 없거나 다른 교정 수단이 올바른 행실을 이끌어 내는 데 반복적으로 실패했음.

(2) 행위의 성격으로 고려할 때 학생의 존재가 학생이나 타인의 신체적 안전에 지속적으로 위협을 초래함.

(f) 교육구의 운영 위원회는 조항(b) 혹은 (e)에 따라 퇴학된 학생을 조항(d)에 명시된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학습 프로그램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본 조항에도 불구하고 조항(e)에 따라 퇴학된 학생에 관하여 학교 카운티 교육감이 일반 중, 고등학교 혹은 초등학교 현장 주변에 이용 가능한 대안 학습 프로그램이 없고 학생을 보낼 유일한 선택지가 다른 일반 중, 고등 혹은 초등학교라 인증하는 경우 학생은 일반 중, 고등 혹은 초등학교에서 제공되는 학습 프로그램으로 보내질 수 있습니다.

(g) 본 섹션에서 “칼”이란 모든 단도, 단검이나 찌르는 것이 주목적인 날카롭고 고정된 날을 가진 다른 무기, 찌르는 것이 주목적인 날을 가진 무기, 길이가 3½ 인치를 초과하는 날을 가진 무기, 날이 고정될 수 있는 접이식 칼이나 날이 보호되지 않는 면도칼을 의미합니다.

(h) 본 섹션에서 “폭발물”이란 국가법(United States Code) Title 18 의 섹션 921 에서 기술된 “파괴용 장치”를 의미합니다.

성교육 및 HIV/에이즈 교육 – EC 51938

캘리포니아의 종합적 성 건강 및 HIV/ AIDS 예방 교육법안 (교육법 51930 – 51939)의 목적은 모든 학생이 의도하지 않은 임신과 성병으로부터 성 및 생식상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월넷밸리 교육구에서는 오는 학년도에 종합적 성건강 교육, HIV/AIDS 예방교육, 그리고/또는 학생 건강 행동들과 위험성에 대해 평가 테스트를 시행할 것입니다.

부모 또는 보호자는:

1. 종합적 성 건강 교육 또는 HIV/AIDS 예방교육에서 사용될 교육자료 (서면 및 시청각 자료)들을 검토해도 됩니다.
2. 닥의 자녀가 종합적 성 건강 또는 HIV/AIDS 예방교육 받는것을 원치 않는다는것을 서면으로 요청해도 됩니다.
3. 교육법 51930 - 51939 사본을 요청해도 됩니다.
4. 이 종합적 성 교육 또는 HIV/AIDS 예방 교육이 교육구 직원이 또는 이외의 컨설턴트가 가르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5. 교육구가 종합적 성 건강 또는 HIV/AIDS 예방 교육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육구 밖의 컨설턴트를 채용하기로 결정했거나 초청 강사를 모셔와 집회를 가질 때에는 아래의 정보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a. 학습 날짜
 - b. 각 초청 강사의 기관 또는 소속 이름

교육구는 7학년-12학년 학생들에게 무명으로, 자발적으로, 그리고 기밀 보장이 되는 조사 및 평가도구 (성에 관련된 그들의 태도 또는 행동에 대한 연령에 적절한 질문들이 있는 테스트와 설문조사를 포함한)를 학생들에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조사 및 평가도구를 사용하기 전에 부모/보호자는 이러한 사실에 대한 통지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부모/보호자는 조사 도구를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자녀가 참여하길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서면으로 요청하실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질 것입니다.

성희롱 – EC 231.5 및 48980(g)

월넛밸리교육구는 성희롱이 없는 학습 환경과 직장 환경을 유지하는데 전념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육구 안에서나 교육구로 부터 온 어느 누구에게도 성희롱을 한 것으로 연루된 학생은 퇴학까지 또는 퇴학을 포함한 징계처분을 받는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희롱을 허용하거나, 연루되었거나, 또는 보고하지 않은 교직원원은 해고까지 또는 이를 포함한 징계처분을 받는 대상일 될 수도 있습니다. 교육구의 성희롱에 관한 방침의 사본이나 성희롱 사건을 고발하시려면 인사과로 연락을 하십시오.

급성심정지- EC 33479 이하 참조

급성심정지(SCA)는 심장이 갑자기 예고 없이 박동을 멈추는 것을 말합니다. 급성심정지가 발생하면 혈액이 뇌나 다른 중요 기관으로 순환되지 않습니다. 급성심정지는 심장발작이 아닙니다. 급성심정지는 심장의 전류 체계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이며 환자가 쓰러지게 합니다. 급성심정지는 심장의 선천성 혹은 유전성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급성심정지는 운동 혹은 스포츠 활동 때 더 일어나기 쉬우며 따라서 운동 선수들이 더 위험합니다. 이런 증상은 운동 선수들에게 불분명하거나 헛갈릴 수 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이 이상 징후를 육체적 피로로 착각하곤 합니다. 수 분 내로 적절히 치료받지 않으면 급성심정지는 92%의 경우에서 치명적입니다. 교육구에서 체육 활동을 하고자 하는 차터 스쿨 혹은 사립 학교는 체육 감독, 코치, 체육 조교 혹은 허가받은 사람이 쓰러지거나 기절하는 학생이나 체육 활동에 참석하는 중에 혹은 참석하자마자 기절했거나 쓰러진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학생을 참석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체육 활동 중 급성심정지의 어떠한 증상이라도 보이는 학생은 체육 조교나 허가받은 사람이 해당 증상이 심장과 관련된 것이라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해당 활동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체육 활동에서 제외된 학생은 의사나 외과 의사로부터 검진을 받고 서면으로 확인을 받을 때까지 해당 활동에 다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매년 보통 학교 일과 중에 시행되거나 체육 수업의 일부로 적용되지 않는 특정한 종류의 체육 활동에 학생이 참여하기 전에 급성심정지에 관한 정보를 받았고 검토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서류를 학생 및 학생의 부모 혹은 법적 보호자가 서명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설문조사 – EC 51513

부모에게 서면으로 아래와 같은 통보를 했다면 학생의 건강 행동 및 위험성을 측정하기 위한 무명, 자발적, 기밀 보장 조사 및 평가도구(섹스, 가정 생활, 도덕성, 종교에 관련된 학생의 태도 및 행위에 관하여 연령에 적절한 질문 테스트, 질문서, 설문조사를 포함하여)를 학생에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1) 이 테스트, 질문서, 또는 설문조사를 시행한다는 2) 학생의 부모에게 테스트, 질문서, 또는 설문지를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3)서면의 부모 동의서. 학생의 성적 기호나 성 정체성에 관한 질문은 이러한 질문을 이미 포함하는 설문지에서 삭제되지 않습니다.

Title IX – EC 221.61

1972 년의 교육법 개정안 Title IX 는 연방 및 주 차원의 반차별 법 중 하나로서 연방 자금을 받는 교육 프로그램 및 활동에서 평등을 보장합니다. 구체적으로 Title IX 는 남녀 학생 및 직원과 더불어 성전환 학생과 성적 고정관념과 일치하지 않는 학생들을 성희롱을 포함한 성차별로부터 보호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법은 성별, 성별 표현, 성 정체성 및 성적 기호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Title IX 에 의하면 학생은 학생의 부모, 가족, 혹은 혼인 상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으며, 임신한 학생과 자녀가 있는 학생은 참여할 자격이 있는 교외 활동을 포함한 어떠한 교육 프로그램에서도 제외될 수 없습니다. Title IX 에 관한 자세한 정보나 Title IX 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불만을 접수하려는 경우 다음과 연락하십시오:

Dr. Jeanette Koh, 교육 서비스 관리자

880 S. Lemon Ave., Walnut CA, 91789

jkoh@wvusd.k12.ca.us

909-595-1261

균등 불만 처리 방침 및 절차 – 5 CCR 4622, EC 234.1, 32289, 및 49013

균등 불만 처리 절차는 다음을 주장하는 불만의 접수, 조사, 해결책에 적용됩니다. 1)성인교육, 통합된 범주적 지원 프로그램, 이주자 교육, 직업교육, 보육 및 발육 프로그램, 어린이 영양 프로그램, 특수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법 또는 주법을 위반했을 때 2) 교육법(EC) 조항 200-220 및 Government Code 섹션 11135 아래 확인된 어떠한 보호 그룹에 대해 불법 차별(주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이나 혜택을 받거나 직접 자금을 받는 지방 단체에서 운영하는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 실제 또는 지각된 성별, 성적 지향, 성별, 인종 집단 식별, 인종, 조상, 출생 국가, 이민 신분, 종교, 피부색,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 또는 나이, 또는 사실로 혹은 감지되는 한 가지 이상의 이러한 특성을 보이는 사람이나 그룹과의 관계를 근거로, 수유시설, 노숙자, 포스터 아동, 소년 법원 학생, 체육 시간, 또는 수업이 없는 과목에 대한 차별을 포함) 3) 국가법(United States Code) Title 20 의 섹션 7114 에 명시된 학교 안전 계획 요구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4)사실로 또는 감지되는 형법의 섹션 422.55 및 교육법 220 에 규정돼 있는 특성들과 장애, 성별, 성별 정체성, 성별 표현, 국적, 인종이나 민족, 종교, 이민 신분, 성적 지향, 또는 또는 사실로 혹은 감지되는 한 가지 이상의 이러한 특성을 보이는 사람이나 그룹과의 관계 5) 공립학교에서 교육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불법적으로 부과하는 학생 비용 6) 교육법 섹션 52060 – 52076 또는 섹션 47606.5 및 47607.3 에 묘사되어 있듯이 Local Control and Accountability Plan (지역자치 및 책무 계획)에 관련된 지역 자치 자금 공식을 통해 설정된 요구사항 위법 7) 지정된 학년의 체육 시간 시수(분)을 준수하지 않을 때 8) 교육 자료 없이 혹은 사전에 고등학교 졸업과 고등교육 기관에 입학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만족하기에 충분한 학점을 완료하고 수여받지 않은 채로 학생에게 과정을 할당할 때 9) 집이 없거나 소년 재판관을 받은 학교 위탁 자녀인 학생을 위한 교육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때 10) 수유하는 학생을 합리적으로 수용하지 않을 때.

불만처리를 위해서는 그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안 시점에서 6 개월 안에 접수해야만 됩니다. 이 균등된 절차는 신청자가 인사과의 부교육감(수사를 조정하고 불만을 제시한 사람이 서면으로 날짜를 늦추는데

동의하지 않는 이상 불만 서류를 받은 60 일 이내에 응답해 주실 분)에게 접수해야만 됩니다. 만약 접수된 불만에 일리가 있으면 교육구는 영향받는 학생들, 부모 또는 보호자들에게 해결책을 제공할 것입니다.

신청자는 교육구의 판결을 받은 후 15 일 안에 서면으로 캘리포니아 교육국(CDE)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불만이 교육구에 접수된 날짜로부터 60 일안에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례들을 포함해서, 캘리포니아 규정 Title 5 의 섹션 4650 에 리스트된 조건이 하나라도 있을 때는 CDE 가 교육구의 조치를 기다리지 않고도 접수된 불만에 대해 직접 개입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교육구가 주법 또는 연방법 그리고/또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 발견되었고, 그 교육구가 법에 따라 시정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 다양한 민사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폭력 범죄의 피해자 – 20 USC 7912

교내에서 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된 학생은 역일 기준 10 일 이내에 교육구 내의 차터스쿨을 포함한 안전한 공립 학교로 전학할 기회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교육구가 해당 지역에서 담당하는 학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구는 근처 교육구와 합의하여 학생을 교육구 간 전학을 통해 수용하도록 하는 등의 다른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권유되나 의무는 아닙니다. 형법상의 폭력 범죄의 대표적인 예시에는 살인미수, 중대한 신체적 부상을 일으키는 폭력, 흉기를 이용한 폭행, 강간, 성폭력, 강도, 고문 및 혐오범죄가 포함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학생 인사 서비스의 관리자와 연락하십시오.

Williams 불만 처리 정책 및 절차 – EC 35186

모든 학교는 충분한 교과서와 학습자료를 제공해야만 됩니다. 영어학습자를 포함한 모든 학생들은 집에서나 방과 후에 사용할 수 있는 교과서나 학습 자료 (또는 둘 다)가 있어야만 됩니다. 학교 시설은 청결하고 안전하며 수리가 잘된 상태로 유지해야만 됩니다. 교사공백과 결격 배치은 없어야만 됩니다. 만약 이 부분에서 학교에 결함이 있고, 그 학교가 정정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인사과 사무실에서 불만 처리 양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부모, 학생, 교사, 또는 일반인은 이러한 문제에 관하여 불만서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불만 처리 양식을 접수하시기 전에, 학교측에서 이러한 우려사항들에 대해 대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하여, 우려사항들을 학교에 먼저 보고하시길 강력히 권장합니다.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만 해당

입학 건강 검사- HSC 124085, 124100, 및 124105

주 법은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가 학생이 지난 18 개월 안에 의사로부터 건강 검진을 받았다는 증명서를 학생이 1 학년에 들어간 이후 90 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준수하지 않거나 면제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학교로부터 5 일까지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아동 건강 장애 예방 프로그램(Child Health Disabilities Prevention Program)을 통해 수혜 자격이 되는 학생들은 무료 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강 검진- EC 49452.8

공립학교에 처음으로 입학하는 모든 킨더가튼 학생들과 1 학년 학생들은 치과 전문인에게 구강 검진을 받았다는 기록을 제출하도록 요구되고 있습니다. 구강 검진은 그 학생이 학교를 시작한 일자로부터 12 개월 이전 안에 받았거나 학생이 시작한 첫 학년도의 5 월 31 일 까지 받아야 만 됩니다.

스쿨버스 안전- EC 39831.5

프리 킨더가튼, 킨더가튼 및 1 학년에서 6 학년의 모든 학생들은 스쿨버스 안전에 대한 안내서를 받을 것입니다. (즉 각 학생의 집에서 가까운 스쿨버스 정류장 리스트, 스쿨버스를 타고 내리는 장소의 일반 규율, 빨간불에 건너는 지시사항, 스쿨버스 위험지대, 스쿨버스 정류장을 향해 또는 정류장으로 부터 걸어가기) 학교 활동을 위하여 이동을 하기전에 스쿨버스 또는 학교 활동 버스에 탄 모든 학생들은 비상구의 위치, 비상기구의 위치 및 사용법을 포함한 (그러나 국한되지 않은) 안전지시를 받을것 입니다. 지시사항은 비상구 옆에 앉는 탑승객의 책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만 해당

군인 신병 모집인들의 액세스 - 20 USC 7908

연방법은 교육구가 군인 신병 모집인들에게 중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액세스를 대학교 또는 장래 고용주에게 제공하는 것과 동일하게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교육구가 학생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를 사전의 동의서 없이는 누출하지 않기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이러한 정보 접근을 거부하시길 원하시면 서면의 통지서를 학교에 제출해야만 됩니다.

AP 및 IB 시험료 – EC 52244

수혜 자격이되는 고등학생들은 AP 시험료 또는/그리고 IB 시험료를 충당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추가 정보를 원하시면 학교에 연락을 하십시오.

칼 그랜트 프로그램– EC 69432.9

칼 그랜트란 상환이 필요없는 대학비 보조금을 말합니다. 학생이 수혜자격이 되려면 최소한의 성적 평균 점수 (GPA)조건을 비롯한 자격과 재정 조건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칼 그랜트는 UC, 칼스테이트,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몇몇 사립 및 직업 대학 또는 테크니컬 학교에서도 칼 그랜트를 받습니다.

학생들이 재정보조금을 신청하는데 도와주기 위하여 모든 12 학년 학생들은 자동적으로 칼 그랜트 신청자로 간주되어 각 12 학년 학생의 GPA 가 캘리포니아 학생 보조 위원회(CASC)로 학교 또는 교육구를 통하여 전자 방식으로 보내집니다. 학생 또는 18 살 미만 학생의 부모/보호자는 학교가 학생의 GPA 를 전자 방식을 통해 CASC 로 보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양식을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학생이 18 세가 되기 전까지는 부모/보호자만이 학생을 참여시키지 않거나 참여시킬 수 (만약 이전에 학생을 참여시키지 않기로 결정했으면)있습니다. 모든 12 학년 학생들의 GPA 는 12 학년의 10 월 1 일에 CASC 로 보내질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고등학교 졸업 자격 시험 – EC 60840

캘리포니아 고등학교 졸업 자격 시험 (CAHSEE) 이 12 학년을 마치는 모든 학생들에게 2017-18 년도 까지 중지되었습니다. 모든 학교들 (주정부 특수학교들을 포함하여)은 2003-04 학년도에 12 학년을 끝마친 모든 학생들, 또는 그 이후에 고등학교 졸업 자격 시험 통과를 제외하고 모든 졸업 필수 조건을 다 충족시킨 모든 학생들에게 고등학교 졸업장을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등학교 능력시험- 5 CCR 11523

캘리포니아 고등학교 능력시험(CHSPPE)은 자발적 시험으로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기초 독해력, 작문, 수학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CHSPPE 를 패스한 수험 자격이 되는 학생은 주 교육국에서 수여하는 Certificate of Proficiency (고등학교 능력 자격증)를 받습니다. 이 능력 자격증을 받은 학생은 (부모와 법적 보호자로부터 확인된 승낙이 있으면) 고등학교를 일찍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고등학교에서 정규적으로 졸업을 하기위해 택하는 모든 필수과목을 마치는 것과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칼리지 혹은 대학에서 학업을 계속하고자 계획하는 학생은 해당 교육 기관의 입학처와 연락하여 고등학교 능력 자격증(Certificate of Proficiency)가 입학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학생은 시험 날에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할 때에만 CHSPPE 를 칠 수 있습니다: 1) 최소 16 세; 2) 10 학년에 한 학년 혹은 이상을 재학하였거나 3) CHSPPE 정규 시험을 치르는 학기가 끝날 때 10 학년도에서 한 학년을 완료할 예정인 경우. 각 시험의 등록비는 25 세 미만의 집이 없거나 위탁 청소년에게는 징수되지 않습니다.

등록 마감일 및 수험일자를 포함한 추가 정보를 원하시면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www.chspe.net/>.

대학 및 직업 기술 교육 – EC 51229

대학 입학 조건 및 고등 교육 정보

캘리포니아 주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교육을 계속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해 커뮤니티 칼리지, 칼스테이트 대학(CSU), UC 대학을 제공합니다.

커뮤니티 칼리지를 입학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18 세의 나이면 됩니다. 칼스테이트 대학(CSU)을 가기 위해서는 고등학교에서 특정된 과목을 택하고, 적합한 성적 및 시험 점수가 있어야 하며, 고등학교 졸업을 했어야 됩니다. 평균 성적 (GPA) 이 3.0 이상이면 시험점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UC 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필수 과목들, GPA 및 시험 점수의 필수 조건들을 충족시키거나, 또는 참여 고등학교에서 상위 4%의 등수 안에 들거나, 또는 시험 점수만으로도 자격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커뮤니티 칼리지를 다닌 후에 칼스테이트 또는 UC 로 편입 할 수도 있습니다. 대학 입학 필수 조건에 대해 추가정보를 원하시면 다음의 웹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www.cccco.edu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시스템의 공식 웹 사이트 입니다.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들의 모든 링크들을 제공합니다.

www.assist.org – 이 대화형 사이트는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칼스테이트나 UC 대학으로 편입 계획을 세우는 학생들에게 편입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www.csummentor.edu – 이 광범위한 온라인 사이트는 칼스테이트 대학 시스템에 있는 학생들과 그 가족들에게 (온라인 입학 신청을 포함하여) 도움을 제공하며 모든 칼스테이트 대학 캠퍼스로 연결이 됩니다.

www.universityofcalifornia.edu – 이 대규모의 웹 사이트는 입학, 온라인 입학 신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모든 UC 대학 캠퍼스들로 연결이 됩니다.

학생들은 또한 직업 기술 교육을 통해서 직업 선택을 탐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과 클래스들은 직업 준비 그리고/또는 취업준비에 특별히 초점을 둔 학교에서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들과 클래스들은 교육과정에 통합되어 있으며 학업 성취를 돕습니다. 학생들은 다음의 웹 페이지를 참조하여 직업 기술 교육에 대해 더 알아볼 수 있습니다: www.cde.ca.gov/ds/si/rp

자신의 학교에서 대학 입학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과목들을 선택하거나, 직업 기술 교육과정에 들어가거나, 또는 양쪽을 다 하기 위해서는 학교 카운슬러와 만나는 것도 좋습니다.

지역 졸업 요건에서 면제되는 포스터 청소년- EC 48853, 49069, and 51225.2

포스터 청소년 또는 노숙 청소년들은 다음과 같은 교육적 권리가 허용됩니다: 즉각적인 등록될 수 있는 권리, 본 학교에 남아 있을 권리, 지역의 일반 학교에 등록할 권리, 부분 학점 받을 권리, 5 년째 다니거나 지역 고등학교 졸업 자격으로 부터 면제해 주어서 주정부 최저 자격으로 졸업할 수 있는 권리, 학업 자료, 서비스 및 과외활동을 이용할 권리

지역 교육기관은 공립 고등학교에서 교육적 권리가 허용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학생에게 ‘균등 불만처리’ 절차 이후에 (지역 졸업 자격으로 부터 면제되는 정보를 포함하여) 해결책을 제시해야만 됩니다.

운동부를 위한 건강 보험- EC 32221.5

주법에 의하면 교육구는 학교 운동부의 모든 학생들이 의료와 병원비가 커버되는 비상 상해보험을 가지고 있나 확인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보험 요구사항은 의료비와 병원비를 커버하는 교육구에서 제공하는 보험, 또는 다른 건강혜택으로 만족 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의 시정부, 주정부, 또는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건강 프로그램에 들수있는 자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에 관한 정보는 학교에 연락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상황

방과 전후의 프로그램- EC 8482.6, 8483(e), 8483.1(e), and 8483.95

홈리스 또는 포스터 아동으로 식별된 학생들은 등록 우선권을 가지게 됩니다. 등록 우선권을 요청하시려면 아동 복지 및 출석 담당자인 Martha Arrellano 에게 909-594-1434 로 연락을 하십시오. 등록 우선권을 가진 학생을 등록시키기 위해 현재 방과 전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을 제적시키는 일은 없을 것 입니다.

이중언어 교육- EC 52173, 5 CCR 11303

이 법안은 교육구가 학생을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에 배정하기 전에 부모님에게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아래의 내용을 알리기 위해서는 통지서를 우편으로 또는 직접 전달해야 합니다.

- 1) 목표, 학습 방법, 프로그램의 내용을 간단하고 비전문 용어로 설명
- 2) 학급을 방문할 수 있고 또한 이중언어 교육의 성질과 목적을 설명을 들을 수 있는 면담시간을 위해 학교에 올 권리가 있으며 이를 권장한다는 내용,
- 3) 이 프로그램에 자녀를 등록 시키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
- 4) 학교 또는/그리고 교육구 자문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 통지서는 영어와 학생의 모국어로 제공해야 됩니다.

직업기술 학과목- EC 48980(m)

EC 51225.3(a)(1)(E) 에 의하여 직업 기술 학과목을 졸업 필수 여건 만족 과목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한 교육구들은 아래의 통보문을 제공해야 됩니다.

1. 교육구의 고등학교 졸업 필수 여건에 관한 정보 및 각 필수 여건이 어떻게 칼스테이트 와 UC 대학 입학 을 위한 필수과목 조건을 만족시키는지 아닌지의 여부
2. 교육구에서 제공하는 직업 테크니컬 교육 과목들 중 칼스테이트 와 UC 대학 입학 필수 과목 조건을 만족시키는 과목들의 전체 리스트 그리고 어떤 특정 대학 입학조건을 이 과목들이 만족시키는지.

경기를 하는 운동부- EC 221.9

2015-2016 학년도를 시작으로 매년 경기를 하는 운동부를 제공하는 차터 학교를 포함한 각 공립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서는 아래의 모든 정보를 학년도 말에 공개해야 됩니다.

1. 총 학생 수 (성별에 따라 분류)
2. 학교에 등록된 학생들 중 경기를 하는 운동부에 참여한 학생 수 (성별에 따라 분류)
3. 남자팀과 여자팀의 학생 수 (스포츠 종류와 경쟁 수준에 따라 분류)

학교들은 위에 밝혀진 정보를 학교의 웹 사이트에 게시하여 공개해야만 됩니다. 만약 학교가 자체의 웹 사이트를 운영하지 않는다면 그 학교는 교육구나 차터 운영자에게 정보를 제출하여 교육구나 운영자 웹 사이트에 게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보는 각 학교별로 나뉘어져야 됩니다.

“경기를 하는 운동부”란 활동을 하는데 코치, 운영 위원회 및 운동 연습이 있고 정해진 시즌 동안 시합을 하며, 시합이 주 목적인 운동을 뜻합니다.

마케팅 목적으로 학생 정보를 누출 하는 행위- 20 USC 1232h

그 학년도에 마케팅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학생들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공개 또는 사용이 개입된 행사 스케줄이 짜여있거나 짜일 계획이면 그 명확한 날짜나 대략 날짜에 관해 최소한 매년 학년 초에 학부모들에게 통보하기를 요구합니다. 이 통지서는 학부모님들에게 학생들이 이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교육구는 마케팅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학생들로부터 수집한 개인 정보의 수집, 공개, 또는 사용에 관하여 부모님들과 상담하여 방침을 세우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침을 채택하거나 계속해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교육구에게는 관할하는 학교에 등록된 학생들의 부모님들께 통지서로 보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통지서는 매년 학년 초에 또는 그 방침의 상당부분이 변경된 후 합당한 기간안에 보내야 됩니다.

영어 집중 프로그램- EC 310, 5 CCR 11309

모든 부모와 보호자들에게 부모님의 프로그램 선택을 수월하게 하기 위하여, 자녀들의 영어집중훈련 프로그램 배정에 대한 통보를 해야되며, ‘부모의 예외 권리 포기’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도 통보를 해야만 됩니다. 통보문은 ‘부모의 예외 권리 포기’ 신청을 위한 지역적 채택 절차의 설명과, ‘부모 예외 권리 포기’ 신청을 평가하기 위한 지역적 채택 지침서를 포함해야 됩니다.

총기 금지 학교 구역- PC 626.9 및 30310 -

예외 재구성: 만약 총기 휴대 면허가 있는 개인이 탄약 또는 재장전한 탄약을 교정에서 휴대하는 것을 허용하는 면제 조항을 삭제합니다. 만약 탄약 또는 재장전한 탄약이 언제나 자동차 안에 있고, 잠겨진 상자 또는 자동차의 잠겨진 트렁크 안에 있다면 개인이 탄약 또는 재장전한 탄약을 교정에서 휴대할 권한을 부여하는 다른 예외 조항이 그 금지된 조항에 추가됩니다.

수유하는 학생들- EC 222

수유를 하는 학생들에게는 학업 벌칙 없이 안전한 방에서 혼자 모유를 짤 수 있는 적당한 시간을 허용하며, 전원 연결 사용 및 모유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허용합니다. 불만을 접수한 후에도 법적으로 불 편의를 도모하지 않았을 경우, 학생은 <http://www.cde.ca.gov/re/cp/uc/> 웹사이트를 통해 캘리포니아 교육국으로 불만을 접수 할 수 있습니다.

이주자 교육- EC 54444.2

이 법안은 이주자 교육 자금이나 서비스를 받는 교육구가 부모 자문 위원회의 설립 및 상담을 통해 프로그램의 기획, 운영 및 평가에 부모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들에게 위원회의 구성을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이 있다는 것을 부모님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보할 것을 요구합니다.

지속적으로 위험한 학교들 - 20 USC 7912

이 법안은 교육구가 지속적으로 위험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는 안전한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허용해야만 한다는 내용이 쓰여진 서면의 방침이 있어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방침서는 모든 당사자들에게 전달되어야 됩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얻은 학생 기록 - EC 49073.6

이 법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얻은 등록학생의 정보를 기록부에 수집하거나 보관하는 프로그램을 고려하는 교육구, 카운티 교육국, 또는 차터스쿨에서는 (정의된 대로) 먼저 부모/보호자에게 그 제안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통보를 해야되며, 그 프로그램을 채택하기 전에 정규 일정이 있는 운영 위원회 공개회의에서 일반 의견 수렴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채택되면 아래의 정보를 부모/보호자에게 연차통지의 일부로 제공해야만 됩니다.

1. ‘소셜미디어’의 정의
2. 수집 또는 보관하는 정보는 학교나 학생 안전에 직접 관련된 것임을 보증
3. 학생이나 학생의 부모/보호자가 수집 또는 보관하는 정보를 검사하기 위해 학생 기록을 볼 수 있는 절차의 설명
4. 학생이나 학생의 부모/보호자가 수집 또는 보관하는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기를 요청할 때의 절차 설명
5. 수집 또는 보관하는 정보는 학생이 18 세가 지난 후 1 년 이내에 또는 학생이 제적된 후 1 년 이내에 (먼저 도달하는 날에) 파기될 것이라는 통보

거주 조사 - EC 48204.2

만약 교육구가 (지정한 대로) 조사를 수행하기로 결정하면, 교육구의 운영위원회는 어떠한 학생이라도 조사를 하기 전에, 학생이 학군 안의 학교에 등록할 수 있는 거주자 요건의 충족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학생 조사에 관한 방침을 채택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방침은 (다른 것들을 포함하여) 교육구가 조사를 시작할 수도 있는 상황들을 가려내고, 교육구가 사설 탐정을 고용할 것인지를 포함하여 사용할 조사 방법을 설명하며, 조사받는 학생의 은밀한 사진이나 비디오 녹음을 금하고, 명시된 대로 항소 절차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방침은 교육구 운영위원회 공개 회의에서 채택되도록 요구합니다.

성적 학대 및 성매매 방지 – EC 51900.6

이 법안은 교육구, 카운티 교육국 및 차터스쿨들이 킨더가튼부터 12 학년 학생들에게 연령에 적합한 성적 학대 및 성폭행에 대한 인식과 방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자녀가 성적 학대 및 성폭행에 대한 인식과 예방 교육에 관련된 클래스에 참여하는 것으로 부터 면제 받기를 원하시는 부모와 보호자들은 서면 요청을 제출하셔도 됩니다.

성적 학대와 성폭행 인식 및 방지 – EC 51950

이 법안은 교육구에게 성적 학대의 빈도와 성격 및 성매매, 위험을 줄이는 방법, 건강한 경계선 설정 기술, 그리고 사건을 안전하게 보고할 수 있는 방법들을 포함한 성적 학대 및 성매매 방지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자녀가 성적 학대 및 성매매 방지 교육과 그 교육 평가에 관련된 클래스에 참여하는 것으로 부터 면제 받기를 원하시는 부모나 보호자들은 요청서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금연 캠퍼스 – HSC 104420 and 104495

이 법안은 담배 사용 방지(Tobacco Use Prevention) 자금 지원을 받는 모든 교육구와 카운티 교육국에게 매 회계 연도의 7 월 이전에 캠퍼스 금연 방침을 채택하고 실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방침은

언제든지 교육구 소유 또는 임대 건물 안, 교육구 소유지, 또는 차량 안에서의 담배 제품 사용을 금해야만 됩니다. 이 방침 및 실행절차에 대한 정보는 교직원들, 부모들, 학생들 그리고 더 큰 커뮤니티에게 명확히 전달되어야 합니다. '담배 사용 금지' 표시판은 학교 소유지의 모든 입구에 눈에 잘 띄게 게시해야만 합니다.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위해 금연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꼭 있어야 되며 격려해야만 됩니다.

HSC 104495 조항은 놀이터 또는 어린이 샌드박스 구역의 25 피트 내에서의 담배, 시가, 또는 기타 담배관련 제품 사용 및 담배 꽂초, 시가 꽂초, 또는 기타 담배 관련 쓰레기 버리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위반하는 어느 누구도 법규 위반죄를 범하는 것이며 이 조항의 각 위반 종목별로 250 불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금지법은 놀이터나 어린이 샌드박스 구역의 25 피트 이내에 위치한 사유지 또는 공공 보도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추가 통지서

테크놀러지 적절 사용법

월넛밸리 통합교육구에서 채택한 목표중의 하나는 학생들의 학습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테크놀러지 사용을 발전시키는 것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월넛밸리 통합교육구 테크놀러지 사용은 특권이지 권리가 아닙니다. 또한 교육구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등록된 학생들은 테크놀러지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에 대한 교육지침과 절차를 따라야만 합니다. 모든 월넛밸리 통합교육구 학생들과 부모/ 보호자님들께서는 교육구 테크놀러지 자원을 사용하기 전에 테크놀러지 적절사용 동의서 (Acceptable Use of Technology Agreement)에 서명을 해야 됩니다. 월넛밸리 통합교육구는 인터넷을 통하여 들어오는 부적절하거나 해가 되는 내용물을 걸러내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고, 학생들도 교육구 테크놀러지를 사용하는 동안 부적절하거나 해가 되는 내용물에 먼저 들어가지 않도록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이 방침을 어겼을 경우 처벌을 받으며, 테크놀러지 사용 특권이 박탈되고 그리고/또는 민사나 형사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결석 방지, 서면 결석 사유

월넛밸리 교육구는 부모님들께서 닉의 자녀들이 정규적으로 학교에 출석을 하고, 의료 예약 및 다른 예약은 방과 후나 방학 기간 동안에 만들도록 권합니다. 교육구는 또한 수업일 중에 여행 또는 그 외의 결석을 피해주길 부탁드립니다. 교육구의 일일 출석율이 높을수록 학생들은 더 많이 배울 것이며, 교육구는 주정부로부터 수업 및 학업 프로그램을 위한 기금을 더 받을것입니다. 학교 달력은 대략 전통 명절기간에 휴가를 계획하는 가족들에게 최소한의 불편을 줌으로써 학생들의 결석율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디자인 되었습니다.

결석 후에 학교로 돌아오는 학생은 집에서 서면의 결석사유를 가져와야 됩니다. 질병, 병원 및 치과 예약은 허용이 되는 결석입니다. 서면의 결석사유가 없는 결석은 무단 결석으로 기록됩니다.

지각

좋은 습관 계발의 일부로 아이들이 시간을 지키도록 권장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학생들은 제 시간에 등교해야 됩니다. 만약 학생이 늦었을 경우, 학생은 양해서를 학교 사무실로 가져와야 됩니다. 30 분 이상씩 반복되는 지각은 학생이 무단 결석생으로 칭해지는 문제로 이어질 것입니다.

무단 결석의 정의- EC 48260, 48262 및 48263.6

학생이 사유없이 3 일 이상 결석을 하든지 30 분이상씩 3 번지각, 또는 합쳐서 할 경우 무단결석으로 간주됩니다. 학생이 한 학년도에 3 번 이상 무단결석으로 보고가 되고, 교육구는 가족들과 만나려는 노력을 했다면, 그 학생은 상습 무단 결석생으로 간주됩니다. 학생이 합법적인 사유없이 1 년 수업일 중 10 퍼센트 이상 결석을 하면 (입학일 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무단 결석생으로 간주됩니다. 사유가 없는 결석이라 함은 교육법 48205 안에 속하지 않는 결석을 말합니다.

무단 결석생 체포/학교 출석 검토위원회 - EC 48263 및 48264

학교 출석부 감독, 행정인, 또는 지명인, 보안관, 또는 보호 관찰관이 카운티나 시, 또는 교육구안에서 합법적인 사유없이 학교를 결석하고 집 밖에 있는 미성년자를 찾았을 경우, 체포를 하거나 또는 수업시간 중에 임시적으로 감독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무단 결석을 하는 학생은 학교 출석 검토위원회(SARB)로 넘겨 질 수도 있습니다.

만성 결석- EC 60901

학생이 1년 수업일 중 10 퍼센트 이상 결석을 하면 (입학일 부터 현재까지), 만성 결석생으로 간주됩니다. 만성 결석은 모든 결석 - 사유가 있든 없든--을 포함하며, 매우 중요한 지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나친 결석은 학업 성취 및 학생의 참여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 학력 평가 시험 (CAASPP) 면제 학부모 정보

캘리포니아 교육법 프로그램 규정에 의해 부모들은 자녀들이 캘리포니아 학력 평가시험 CAASPP 를 치르는 것으로부터 면제 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육법, 챕터 5. 캘리포니아 학력 평가시험, 섹션 50615, Article 2

"법의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챕터에 따라* 시행되는 시험의 일부 또는 시험 전체로부터 자녀를 면제 시키기 위해 학교 당국에 제출한 부모 또는 보호자의 서면 요청은 허용될 것이다."

*이 챕터에

3 학년- 8 학년 및 11 학년의 SBAC 영어 및 수학 총괄적 평가시험

5 학년, 8 학년, 10 학년의 SBAC 과학시험

캘리포니아 대체 시험(CAPA)

조기 평가 프로그램(EAP)

Title 5 of the CA Code of Regulations, Division 1, Chapter 2, Subchapter 3.75 "표준 학력고사 및 보고 프로그램", 섹션 852, (a) " 부모 또는 보호자는 자녀가 교육법 섹션 60640 에 따른 어떠한 시험의 일부 또는 전체를 치르는 것으로부터 면제 시키기 위해 서면 요청을 제출 할 수도 있다. 부모 또는 보호자가 먼저 요청을 해야만 되며 교육구와 교직원들은 어떤 아이를 위해서라도 서면 요청을 권유하거나 부추겨서는 안된다.

아동 학대 및 방치 보고- PC 11164 이하 참조

월넷밸리 통합교육구의 직원들은 (법에 의해) 직원이 언제든지 타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 아동학대와 방치를 보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직원들은 그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직원이름과 보고서는 비밀이며, 정부허가 기관외에는 밝힐 수가 없습니다.

월넛밸리 통합교육구는 돌보는 모든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교육구의 모든 직원들은 언제든지 타당한 의혹이 가는 학대나 방치가 생겼을 경우 아동학대나 방치를 보고 해야만 하는 보고 의무자로 간주됩니다. 교육구 직원들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불만 사항은 정식 보고서로, 전화로, 개인적으로 또는 서면으로 해당 지역의 법 집행 기관 (예: 경찰서, 세리프 부서, 카운티 보호 관찰부서, 또는 카운티 복지부/카운티 아동보호 서비스)에 제출해야만 됩니다.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의 이름과 불만 보고서 자체는 모두 기밀 사항이며 공인 기관을 제외하고는 공개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학부모 및 학생의 보호자들은 교내에서 학생 학대의 의혹이 되는 교직원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불만을 제기 할 권리가 있습니다. 불만은 지역 법 집행 기관에 접수해도 되며 또한 인사부에 연락하여 사건을 교육구에 통보해도 됩니다.

학교에 고용되었거나 종사하는 사람이 타당하고 꼭 필요하여 사용한 어떤 힘으로 인해 가해진 상처는 아동학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사람들에게 신체적으로 부상을 입히거나 물질적 손상을 위협하는 소동을 중지시키기 위해
2. 자기 방어의 목적으로
3. 학생의 컨트롤에 있는 무기나 위험 물질을 빼앗기 위해
4. 질서를 유지하고 재산을 보호하며, 학생의 건강 및 안전을 보호하고 학습에 도움이되는 적당하고 적절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필요한 통제력을 행사하기 위해

학교 교정에서의 정중함 – CC 1708.9, EC 32210

공립학교나 공립학교 모임에 의도적으로 방해로 놓는 사람은 경범에 해당되는 500 불 미만의 벌금이 부여되는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미성년 자녀에게 행한 부모/ 보호자의 행동을 제외하고는) 공립학교나 사립학교 교정에 들어가거나 나가려고, 어떤 사람에게 부상, 협박, 힘으로 방해, 힘으로 위협, 신체적으로 방해, 또는 비폭력적 신체적 방해의 행동을 고의적으로 한다든지 시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자녀 양육권 문제

양육권 분쟁은 법정에서 처리되어야만 됩니다. 학교는 친부모가 자녀와/ 또는 학교기록부를 보러 할 때 거부할 사법권이 없습니다. 예외로는 학교 파일에 서명이 되어있는 금접 금지령이나 합법 이혼서류 (특히 방문규제가 적혀있는)등이 있을 경우입니다. 어떤 학생을 내보낼 경우 학생의 신변보호에 의혹이 있을 때에는 학교 행정관이나 지명인의 판단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이 학교에 방해가 된다면 법 집행원에게 연락하여 중재해 줄것을 부탁 할 것입니다. * 부모님들께서는 양육권 문제에 학교가 연루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학교는 비상시 연락 카드에 적혀있지 않은 부모 또는 다른 사람이 아이를 픽업하려할 때 자녀 양육권이 있는 부모에게 연락을 취하기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위험한 물건

레이저 포인터 --형법 417.27

어느 학생이라도 초등학교 또는 중 고등학교 구내에서 레이저 포인터를 소지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단, 정당한 수업 목적이거나 기타 수업 관련 목적으로 소지하는 것은 예외입니다.

모조 총기-형법 12550, 12556

비비건을 모조 총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공립학교를 포함한 공공 장소에서 어떠한 모조 총기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거나 노출시키는 것은 형법상의 범죄가 됩니다.

재난 대비 교육자료- EC 32282.5.

캘리포니아주 교육국은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교육 자료들을 캘리포니아의 영어학습학생들이 모국어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중 최소한 3 개의 언어로 준비하여 교육구들과 카운티 교육 담당부서에게 전자 방법으로 배포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복장 규정 /유니폼- EC 35183

이 법안은 학교 전교생들의 유니폼 착용을 요구하거나, 학생이 갱 관련 의류를 입는 것을 금지하는 복장 규정 방침을 채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학교는 전교생의 유니폼 착용을 요구하는 방침을 실행하기 6 개월 전에 부모 및 보호자들에게 통보하도록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방침은 경제적으로 곤란한 학생들을 돕기위한 자원 정보 제공 및 만약 학부모가 그 유니폼 방침에 따르지 않기로 결정을 했을 경우 학업적 처벌, 차별 대우, 또는 학교 출석을 거부 당하는 학생이 없을것임을 다뤄야 합니다.

청취 또는 녹음 전자기기- EC 51512

누구든지 (학생을 포함하여) 교사와 교장 선생님께서 부터 이전의 승낙이 없이 교실안에서 청취 또는 녹음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종류의 전자기기사용도 금지됩니다. 이는 학교의 학습 과정과 훈육을 방해하며 손상시키기 때문입니다. 학생 이외에 누구든지 고의로 위반할 경우 경범죄를 범하게 됩니다. 위반하는 학생은 적절한 징계처분을 받게될 것입니다.

전자 니코틴 흡입 형식 (전자 담배)

월넷밸리 통합교육구는 언제든지 교육구의 모든 소유지와 교육구 차량안에서의 니코틴 포함 유무에 상관없이 담배 제품 사용을 모방하는 전자 담배, 물 담뱃대, 시가릴로 및 다른 연기방출 기기 같은 전자 니코틴 흡입 형식 (ENDS)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전자 니코틴 흡입 형식 (ENDS)는 종종 담배나 시가 파이프처럼 보이게 만들었지만, 또한 펜, 천식 흡입기 및 음료 용기 등 일상품처럼 보이도록 만들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기들은 니코틴 연기 뿜기에 제한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마리화나, 코케인, 헤로인 같은 마약 흡입에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보건 및 안전법 119405 조항에 의하면 미성년자들에게 전자 담배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그러한 어떤 기기도 소지하고 있으면 안된다는 뜻입니다. 특히 ENDS 는 보건 및 안전법 11014.5

조항에 정의 된대로 마약 관련 도구로 간주되기 때문에 ENDS (니코틴 흡입시스템)를 소지하거나 제공하거나 판매를 주선 또는 거래하는 학생들은 징계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담배, 담배 종이, 또는 다른 담배 준비물 또는 담배 제품을 피우기 위해 쓰는 용품 및 관련 용품 또는 규제 약물을 판매하거나, 받거나 또는 소지한 18 세 미만의 모든 사람은 유죄 판결 후에 \$75 의 벌금을 내거나 30 시간의 사회봉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전자 신호기기- EC 48901.5

교육구 또는 개별 학교의 방침 또는 관행으로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동안이나 학교 행사에서, 핸드폰과 호출기를 포함한 전자 신호 기기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학생들의 권리를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전자 신호 기기의 소유나 사용이 학생의 건강을 위해 필수적이고, 학생의 건강 관련시로만 사용을 제한하는 면허 의사의 결정이 있었다면 어느 학생도 전자 신호 기기 소유나 사용으로부터 금지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포스터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배치- EC 48850 이하 참조

교육구의 교육담당 연락관은 Foster 서비스 양육하에 있는 학생이 그에게 최선의 권익을 가져다 주는 안정적인 학교 배치를 받고 최소 제한 교육 프로그램에 배치를 받으며 모든 학생들에게 허락되는 학업을 위한 자원, 서비스와 과외 활동 및 보충활동을 이용할 수 있고, 과정을 마친 것에 대하여 전체 또는 부분적인 점수를 얻으며 캘리포니아 주가 정한 학생 학업성취 기준에 이르도록 하는 중요한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합니다.

건강 보험- EC 49452.9

댁의 자녀와 가족은 무료 또는 저 비용의 건강보험혜택 자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 선택 및 등록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안전대책 부서에 연락을 하시든지 www.CoveredCA.com 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인터넷 안전

교육구는 미성년자들에게 제기될 수도 있는 인터넷 사용의 위험성에 대해 부모 또는 보호자들에게 알리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아동 범죄자들과 사이버 폭력자들이 사용하는 웹 사이트들에 대해서.

의료 기록 공유 - HSC 120440

이 법은 교육구 기획위원회가 학생의 건강 기록 정보를 예방 접종 시스템에 제공하는데 있어서 아래 내용을 학생,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요구합니다.

1. 의료 기록은 지역 보건 부서와 국가 보건국과 공유될 수도 있습니다.
2. 학교가 기록을 공유하게 될 국가 보건국 또는 예방접종 등록 시스템의 이름과 주소
3. 지역 보건 부서 및 국가 보건국과 공유한 정보는 기밀정보로 처리되며 요청이 있을 경우, 의료인, 학교 보육원, 가정 보육원, WIC 서비스 제공자, 국가 복지국, 가정위탁 기관 및 의료 보험회사들과 서로 공유하는데만 사용될 것입니다.
4. 결과로 이 제공자들, 기관들 및 단체들은 이 정보를 기밀 정보로 처리하고 명시된 대로만 사용할 것입니다.

5. 학생, 부모, 또는 보호자는 이 방법으로 공유한 어떠한 예방접종에 관련된 정보도 검토할 수 있으며 오류를 수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6. 학생, 부모, 또는 보호자는 여기에 묘사한 방식으로 정보가 공유되는 것, 언제라도 예방접종 독촉 통보를 받는 것, 또는 이 모두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7. 의사는 부모가 거부한 후에도 환자 치료 또는 공중 건강을 보호할 목적으로 이 정보에 대한 액세스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 보건 부서 및 국가 보건국은 부모가 거부한 후에도 공중 건강을 보호할 목적으로 이 정보에 대한 액세스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학생, 부모 또는 보호자들은 기록 공유 허용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통지서는 일반 우편으로 제공해도 되며 반환 양식 또는 연락 전화번호와 같이 거절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식을 포함해야만 됩니다.

메건의 법(Megan's Law) – PC 290 이하 참조.

가주에 등록된 성범죄자들의 정보는 가주 법무부 웹사이트인 <http://meganslaw.ca.gov/>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웹사이트에서는 자신과 가족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성범죄자들에 관한 사실, 자주 묻는 질문들, 가주의 성범죄자 등록 의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재산 피해 – EC 48904

택의 자녀가 의도적으로 학교 소유물을 손상시켰다든지 학생에게 빌려준 학교 소유물을 반납하지 않았을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는 배상 책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배상할 때까지 학교는 학생의 성적, 졸업장, 성적 증명서를 유보할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 정보 누출 – WIC 831

법정명령이 내렸을 경우에만 연방 정부 공무원에게 학생의 정보를 전파, 첨부 또는 제출할 것입니다. 법정 명령에는 소년원의 재판장의 사전 승인을 표시해야만 됩니다.

부모/보호자 참석 요구 사항– EC 48900.1

교사는 교사로부터 정확을 당한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학생의 학급 수업시간의 일부를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 또는 보호자의 학급 참석은 학생이 정확당한 학급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요구 조건의 시행에 관해서는 부모나 보호자에게 서면 통지방식으로 보내질 것입니다. 부모나 보호자가 그의 고용인에게 합리적인 통보를 제시했을 경우, 고용인은 부모 또는 보호자가 이 요구 조건을 따르는데 제재할 수 없습니다.

학교 책무 보고서– EC 35256 및 35258

이 법은 교육구가 각 학교의 학교 책무 보고서를 개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EC 33126, 32286 and 52056 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교육구는 보고서를 공개하고, 부모 또는 보호자들에게 요청에 따라 하드 카피본이 제공될 것이라는 통보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2008-09 학년도부터는 교육구가 학교 책무 보고서를 하드 카피본으로 2월 1일 까지 준비해야 됩니다.

학교 안전 계획- EC 32280 이하 참조

월넷 통합 교육구의 각 학교는 재해 준비 계획 및 비상사태 절차를 포함한 포괄적인 학교 안전 계획을 지니고 있습니다. 복사본은 각 학교 사무실에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소방 및 비상 훈련은 각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 되고 있습니다.

학교 방문 절차- EC 51101(a)(12)

공립학교에 등록된 학생들의 부모나 보호자들은 자녀들의 교육에 상호 지원 및 존중하는 파트너로서 학교 방문 절차를 포함한, 교칙에 관하여 사전에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기회가 주어져야만 합니다.

형법 PC 627.6: 이 조항은 학교가 방문자 등록 필수조건, 등록이 필요한 시간, 등록 위치, 해당 위치로 인도하는 길 및 등록 조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 통보문을 모든 입구에 게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교 사물함 수색

학교 사물함은 학생에게 배정을 했더라도 월넷밸리 교육구의 소유물로 남아있습니다. 그 사물함들은 언제든지 교육구가 필요할 경우에 수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물함을 학교 관련 목적 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학교 사물함의 부적절한 사용은 단계별 징계를 초래할 것입니다.

섹션 504 – 29 USC 794, 34 CFR 104.32

만약 학생이 학교 또는 학교 행사에 참석할 수 있는 능력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장애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섹션 504 에 따라 서면의 수용 계획서를 기록으로 남길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은 최소한으로 제한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섹션 504 의 검사, 평가, 시행 임무를 위하여 월넷 밸리 통합교육구에서 지명한 Sarah Ammon 에서 연락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 행동 – EC 51100

학생들의 임무- 5 CCR 300

학생들은 학교 규칙을 지키며, 모든 지시사항을 따르며, 공부를 열심히 하고 교사들이나 다른 관계자들에게 공손히 대하고 욕설이나 속된말 사용을 삼가해야 됩니다.

관할 – EC 44807

교사진은 등 하교길, 운동장, 또는 쉬는 시간에 학생들의 행동에 대해 엄격하게 규칙을 지키도록 고수할 것입니다.

필수적 퇴학 위반사항- EC 48915

학교는 교내 또는 교외 학교 활동에서 아래의 행동을 한 학생들에게 즉시 정학을 주고 퇴학을 추천할 것입니다.

- 1.총기를 소지, 판매, 또는 공급했을 때
- 2.다른 사람에게 칼을 휘둘렀을 때
- 3.규제 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했을 때
- 4.성폭행을 했거나, 시도 했을 때
- 5.폭발물을 소지했을 때

교육위원회는 학생이 이러한 행동을 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오면 퇴학조치를 명할 것입니다.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등교하기- VC 21212

18 세 미만의 어느 누구도, 명시된 기준을 충족시키는 자전거 헬멧을 제대로 맞추고, 조여서 착용하지 않으면 도로, 자전거도로, 또는 어떠한 공공 자전거 도로 및 산책로에서 자전거, 모터가 달리지 않은 스쿠터, 스테이트보드, 인라인 또는 롤러스케이트를 탄다든지 타인이 타는 자전거, 모터가 달리지 않은 스쿠터, 스케이트보드에 동승할 수 없습니다.